

## 하기번(萩藩) 상급가신단의 구조 - 가독 상속과 군역을 중심으로

정하영\*

### I. 머리말

그동안 일본에서 조슈번에 대한 연구는 주로 메이지 유신을 주도한 하급 무사에 치중됐고<sup>1)</sup> 또한 시기적으로도 주로 막말(幕末) 유신 기에 집중된 경향이 있었다. 설령 근세와 관련되었더라도, 메이지 유신의 성공이라는 결과론적인 관점에서 메이지 유신을 주도 할 수 있었던 제도 혹은 개혁 혹은 개혁 변주를 분석했다. 위와 같은 연구는 메이지 유신 시기 하급가신의 상황을 파

\* 중국 광저우남방학원(广州南方学院) 동아시아연구소 교수

1) 1863년 아마구치로 번청이 옮기기 전에 번청이 하기에 있었고 모리(毛利)씨 본가가 직접 통치했기 때문에 하기번이라고 불리 운다. 일반적으로 분가인 지번(支藩)까지를 통칭하여 조슈번이라고 한다. 그런데 1653년에 생긴 번도 있고 지번은 그들 독자적인 가신단이 있다. 따라서 2장부터는 하기번으로 서술한다. 예를 들면, 모리씨(家) 등에서 일본적 표현으로는 '가'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지만, 한국어의 주어 등과 혼동이 되므로 이하 '씨'로 표기. 상중하급 무사의 분류는 각주 14)를 참고하라.

악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이들과는 다른 우마마와리격 이상의 상급가신단의 구조와 제도 및 관행 내지는 문화를 소홀히 다루었다. 그러나 최근 위의 문제 점을 인식하고 상급 가신단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이들 선행연구들을 분석하기 전에, 그동안 일본 학계에서 논의 된 근세 가신(단)에 대한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전국적인 차원의 가신단 연구에는 크게 두 가지 경향이 있었다. 즉 무사의 관료적 성격을 강조하는 막번 관료제론과 영주(領主)적 성격을 강조하는 근세 영주제론이 있다<sup>2)</sup> 그리고 여기서 번주와 가신의 관계, 즉 가신의 번주(혹은 주군)에 대한 종속성 혹은 자율성을 강조하는 논의가 나왔다. 대개 막번 관료제론(화)을 강조하면 종속성, 근세 영주제론을 강조하면 자립성·자율성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자율성을 강조하는 논의가 등장하였다. 예를 들면, 가사야 가즈히코(笠谷和比古)의 오시코미(押込み)와 네기시 시게오(根岸茂夫)의 잇키우치(一騎討) 등이다.<sup>3)</sup> 그러나 위의 논의는 전체 무사(사회) 혹은 무사 개개인의 의식에 중점을 둔 나머지 무사의 다양성을 소홀히 다루었다. 이에 대해 최근 활발히 논의되는 것이 신분적 주연론(周縁論)이다. 이는 주변적인 존재 혹은 신분을 통해서 무사신분의 특질을 분석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주연적 신분이란, 예를 들면, 모리시타 도루(森下徹)의 봉공인 및 데코(手子) 등의 연구,<sup>4)</sup> 이소다 미치후미는 신분적 주연인 봉공인을 분석하고 가신단 특히 아시가루(足輕)와 가치(徒)를

2) 막번 관료제는 근대 관료제의 특징과는 다르지만, 인격적인 사람(人)에서 직(職)으로 전환되고 조직의 합리화 등이 이루어졌다. 藤井壽台(1999). 江戸時代の官僚制. 東京: 青木書店, 195-204. 지카타치교(地方知行, 후술)에서, 상위자(혹은 번)는 가신의 자율성을 제한해서 관료화를 진행 시키려하고, 가신은 영지를 자신의 가산으로 생각하고 이에(家)의 상속을 중요시했다. 高野信治(2014). 近世の武士と知行. 九州文化史研究所論叢, 57, 14-15. 이는 가신의 영주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3) 오시코미는 주군이 권력을 전횡하거나 품행이 바르지 못한 경우, 지분(持分)을 갖은 가로 등 상급가신이 주군을 감금 유배 혹은 강제은거 시키는 행위이다. 笠谷和比古(2006). 主君「押込」の構造—近世大名と家臣団. 東京: 講談社學術文庫. 잇키우치는 근세의 합전에서 와카토우(若党)와 봉공인(奉公人)으로 구성된 무가를 최소단위로 하는 일대일로 승부이다. 根岸茂夫(2000). 近世武家社會の形骸と構造. 東京: 吉川弘文館.

4) 森下徹(2004). 近世瀬戸内海地域の労働社会. 東京: 溪水社.

중점적으로 분석했다.<sup>5)</sup>

하기번 상급가신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네모토 미나미(根本みなみ)는 근세 중후기 다이묘가(大名家)와 이치몬(一門)의 관계에 대한 동태적 연구, 즉, 이치몬이 다이묘가에 대해 전략적으로 자기 가문에 대한 의식을 형성하고 특권을 주장한 반면에 다이묘가는 이에 대해 부정과 긍정을 하면서 다이묘가(번주)를 중심으로 한 어가(御家)의 질서를 재구축해갔다고 분석했다.<sup>6)</sup> 이 관점은 일본 학계에서 근세 무사들이 어가에 편입되어 종속성을 지닌 가신 내지는 관료가 되었다는 그동안의 연구를 비판하면서 자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주로 다이묘가와 이치몬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치중한 나머지, 이치몬의 내부구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다나카 세이지(田中誠二)는 이전의 연구가 주로 야쿠카타(役方)라 할 수 있는 도쇼쿠(當職)와 도야쿠(當役)에 치중했다고 하면서,<sup>7)</sup> 오구미(大組) 여덟 개의 조의 성립과정과 최고위직인 가한 야쿠(加判役)의 성립 및 직무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그는 하기번은 다른 번과는 달리 어가소동(御家騒動), 번주와 가신과의 반목과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를, 이치몬의 구성이 비교적 평준화되고 모토나리(元就) 이래로 이치몬의 단결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sup>8)</sup> 이는 위의 네모토 미나미와는 대조되는 관점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근세 초기, 또한 가한야쿠에 치중되어 전체 시기와 상급가신 전체를 분석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모리시타 도루는 무사라는 신분 집단으로서의 오구미 조직 내부구조 문제(기생적 존재, 중간층의 공동화), 오구미시(大組士-이하 오구미 무사로 표기)와 하급무사 및 봉공인과의 관계(포획과 부패)에 대해 분석을 하

5) 磯田道史(2003). 近世大名家臣団の社會構造.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6) 根本みなみ(2018). 近世大名家における「家」と「御家」-萩毛利家と一門家臣-. 東京: 清文堂. 이치몬은 가문을 의미하지만, 하기번은 격(제)의 의미도 포함됐다.

7) 야쿠카타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역직, 즉 문관을 의미하고, 반카타(番方)는 군사부문을 담당하는 역직을 반카타(番方), 즉 무관을 의미한다.

8) 田中誠二(2005). 萩藩の家臣団編成と加判役の成立藩制機構と家臣団. 山口大学文学会志, 55, 59.

였다.<sup>9)</sup> 이는 신분적 주연론의 관점에서 하급무사 및 봉공인과 오구미 무사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막번 관료제의 문제점을 분석한 것이다. 단, 이 연구는 오구미와 오구미 상층과의 관계와 문화적 측면에 대한 동태적인 연구가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고우모토 후쿠미(河本福美)는 근세 영주(제) 및 영지(地方知行地)는 중세와는 달리 유명무실화 됐다는 종래의 논의에 대해, 오구미적 영주와 영지의 관계에 대한 사례를 분석했다. 영주는 영지에서 영주로서 행동하고 하쿠쇼(百姓, 농민)도 그를 영주로서 인식했다.<sup>10)</sup> 이는 종래의 연구와는 달리 오구미적 영주의 자율성 내지는 독자성을 분석한 것이지만, 이 연구는 주로 하쿠쇼와 영주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가신단의 구조와는 약간 거리가 있다. 쓰보우치 레이코(坪内玲子)는 통계학적 방법으로 하기번의 오구미와 무큐도오리(無給通)를 포함한 하급무사 두 그룹의 가계계승과 자녀수 및 데릴사위 등을 분석했다.<sup>11)</sup> 그러나 이 연구는 오구미 이상의 상급 가신을 분석하지 않았고, 또한 표본 분류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다.<sup>12)</sup> 우에다 준코(上田純子)는 요리구미(畜組)적인 우라(浦)씨의 사례로 근세 후기에서 막말 시기로의 군단 재편성 과정을 분석했다. 비록 막말시기에 집중됐지만, 근세 후기의 군단 편성과 전투원 및 비전투원의 신분 편제와 변화 과정을 엿볼 수 있다.<sup>13)</sup> 다만, 주로 배신(陪臣, 번주의 측면에서 가신의 가신을 말함), 특히 하급배신에 대한 연구이다.

위의 일본학자들(根本みなみ; 田中誠二; 森下徹; 河本福美; 坪内玲子; 上田純子)의 연구는 상급가신의 전체를 분석하지 않고 특정의 격제 혹은 역직의 분석에 치중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비록 상급 가신단 내부에서도 3개의

9) 森下徹(2012). 武士という身分-城下町萩の大名家臣団. 東京: 吉川弘文館

10) 河本福美(2003). 萩藩の地方知行制について-大組・羽仁氏を事例として-. 山口県史研究 11.

11) 坪内玲子(2000). 萩藩藩士における家系の継承と人口学的要因. 日本研究 22.

12) 예를 들면, 동생과 사촌은 양자 표본, 양녀와 손녀의 데릴사위는 데릴사위로 분류해야 되는 데, 저자는 별도로 분류하고 있다.

13) 上田純子(2007). 幕末の軍団. 森下徹編 武士の周縁に生きる. 東京: 吉川弘文館

격제가 있지만, 이들은 말을 탈 수 있는 자격과 여러 가지 의례 및 가독 상속 권 등에서의 특권을 공히 갖는 사분(士分) 대등의 원칙이 존재했다.<sup>14)</sup> 따라서 전체 상급 가신단의 구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본고는 위의 학자들이 특정의 관점에서 논한 무사의 자율성과 종속성, 혹은 영주제와 관료제의 차원에서 논의하기 보다는 상급가신단의 구조를 분석하려고 한다. 위의 저자들과는 달리 가독 상속을 통해 상급가신단의 구조, 즉, 가신단 구성 및 관계와 균역의 문제, 특히 가독 상속과 균역 문제를 전면적이고 동태적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이와 같은 접근 방법은 일본 학계, 적어도 기존 하기번에 대한 연구에서 볼 수 없는 방법이다. 비록 쓰보우치 레이코가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 인구학적 배경 및 요인과 가계계승의 변화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주목되나, 이는 단순히 가계계승과 자녀수 및 데릴사위 양자 등의 변화 등에 대한 분석에 지

14) 이들은 사분(士分, 번에 따라 추고슈[中小姓]를 포함. 하기번의 엔킨즈키[遠近付]의 위치에 해당)이라고 이 중 영주는 사무라이슈(侍衆)라 한다. 부연하여, 사무라이(侍) 용어는 번과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가치(徒)까지 포함한다. 사분은 말을 탈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녹봉이 낮은 헤이시(平士, 하기번의 오구미시)라도 가로와 같은 방에서 동좌할 수 있고(가치 이하는 허락되지 않음), 사분 사이는 간단한 인사로 주고받는다(추고슈는 가로를 보면 옆으로 비켜서서 인사). 磯田道史(2003), 앞의 책, 22-66 참조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치 이상은 가독상속권을 갖지만 사분과 달리 차별을 받았다. 여기서 가독상속이란, 가장, 즉 당주(當主 이하 당주로 표기)의 지위, 즉 (무사의 경우)가격(家格)과 가록 혹은 봉록 상속을 의미한다. 종종 가명(家名)도 가록 상속과 결합되어 가독상속의 주요 요소에 포함되기도 한다. 이외에도 오구미격 우마마와리 이상의 가신들 사이에서 양자 및 혼인 관계를 맺었다. 예를 들면, 아가와 모리씨의 역대 당주의 자녀 및 양자(녀)는 총 50명, 이 중 9명이 오구미격 우마마와리이고 그 나머지는 이치몬한케(一門八家) 혹은 지번주의 자녀들과 혼인 및 양자 관계를 맺었다. 阿川毛利譜錄 참조 그리고 우마마와리는 오구미격(전 구성원) 이상을 말하기도 하고, 오구미 중에서 시대에 따라 1백석 혹은 2백석 이상을 말하기도 하지만, 대략 1백석을 기준으로 구성원의 출신 내력과 가독상속 및 의례 등에서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도 메이지 유신 후, 오구미 무사 중에서 1백석 이상은 상사(上士)로 대우했다. 그리고 1백석 이하는 중사상등(中士上等)으로 되고, 엔킨즈키는 중사하등(中士下等)으로 됐다. 萩藩論(萩藩論 もりのしげり). 294 참조 따라서 본고는 오구미격 중에서 1백석 이상을 상급가신(즉 우마마와리), 오구미격 중에서 1백석 이하와 엔킨즈키를 중급가신, 무큐도오리와 가치 및 산주닌도오리(三十人通)를 하급가신으로 본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산주닌도오리격 이상이 사무라이 혹은 무사이고 그 이하는 잡병이지만, 번 직속인 아시가루 및 주켄(中間) 등은 경우에 따라서는 하급가신 및 가중(家中, 후술)로 포함되기도 한다.

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가독 상속 제도와 문화를 통해 구조를 분석하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조슈번 혹은 하기번의 가신단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없다. 조슈번도 막번체제, 가신단은 군사조직의 격제에 바탕을 두고, 기본적으로 병농분리와 촌락자치 등을 행했다. 그러나 조슈번은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세키가하라 전투의 패전에 의한 영지 삭감이라는 역사적 조건으로, 다른 번과는 다른 독특한 용어와 복잡한 제도 및 직제를 사용해서 비교적 분석하기가 어렵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조슈번은 메이지 유신의 주도세력으로 우리의 역사와 매우 관계가 깊기 때문에 분석이 필요하다.

본고의 2장에서는 防長回天史, もりのしげり, 萩藩諸家系譜, 閩閩録(이하 별열록으로 표기) 등의 분석을 통해 모리씨의 역사와 친인척 등을 개괄적으로 서술한다.<sup>15)</sup> 그리고 전체적인 하기번 격제를 간략하게 서술한다. 이는 가신단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기번 전체 구조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또한 한국 독자에게 그 구조와 용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3장에서는 가신단의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아가와(阿川)모리씨, 마스다(益田)씨, 이바라(井原)씨, 요시다(吉田)씨의 무가 문서를 분석한다.<sup>16)</sup> 그리고 본고는 주로 교호(享保)기간(1716-1736년)의 분겐초, 분카분세이(文化·文政)기간(1804-1830년)의 분겐초, 萩藩給祿帳(1885년)을 분석한다. 여기서 분겐초는 지고토리(地行取り)라 하여 영지를 배령 받은 가신의 격(順位)에 따라 성명 및 고쿠다카(石高, 미곡 수확량) 등이 기재되고, 영지가 없는 하급가신은 무큐초(無給帳)에 기재되고, 이 둘을 합한 것을 규료초(給祿帳)라고 한다.

15) 防長回天史는 스에마치 켄초(末松謙澄, 이토 히로부미의 사위)가 편찬한 것으로, 하기번의 각 분야를 다루었고, 특히 막말 메이지 유신 역사를 연구하는데 기초적 사료로 사용된다. もりのしげり에는 모리씨와 이치몬 등 가신들의 가계표, 의례, 직제 등이 기재되었다. 萩藩諸家系譜는 사료를 바탕으로 상급가신 2백여 명의 계보를 일목요연하게 기재했다. 閩閩録은 1720년-1726년에 편찬한 것으로 가계와 계보 등이 기재됐다.

16) 아가와모리씨, 이바라(井原)씨, 요시다(吉田)씨의 자료 출처는 山口県文書館(참고문헌에 청구 번호 기입), 마스다씨의 자료는 須佐郷土史研究会의 사이트(해제본), 아마우치씨의 자료 출처는 東京大學古文書フルテキストデータベース이다.

본고는 위의 사료와 분견초 및 기존 문헌연구를 통해 가신단의 구조와 구조의 구성요소인 제도와 관행 등을 분석한다. 여기에서 제도와 관행은 주로 가독상속을 말한다. 가독상속은 번주(혹은 주군)와 가신의 주종관계를 형성하는 기제이고, 가독상속(자)은 봉공, 특히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군역을 행하게 할 전제이자 의무이다. 또한 가독상속을 분석해야만 가신단의 구조와 실상, 군역 및 가츠히야쿠(家中役)와 이를 뒷받침 하는 경제상황 등을 알 수 있다.<sup>17)</sup> 즉 가독상속의 분석은 가신의 창출과 가신단 구성·관계 및 군역 등의 문제를 동태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본고에서는 가독상속 등의 제도를 1660년에 제정된 것으로 하기번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법인 萬治制法과 비교하면서 그 실태를 분석한다. 본고는 이와 같이 가독상속을 통해 상급가신단의 구조와 문화를 분석하고, 또한 학제적 시각에서 사료를 바탕으로 가독상속과 군역 등의 실상과 관계 및 문화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II. 하기번의 개항과 격제

### 1. 하기번의 개항

가신단의 구조를 알기 위해서 격제 형성의 계기가 된 모토나리의 자녀(번주)들부터 살펴봐야 한다. 모토나리 적자 13대 당주인 다카모토(隆元)가 급사하여 데루모토(輝元)가 가독을 상속했다. 그러나 그의 시대 세키가하라 전투 패전 이후, 이전 주고쿠(中國)지방의 8개국 슈인다카(朱印高, 쇼군으로부터 공적으로 받은 고쿠다카) 118만석에서 방장(防長) 2개국 29만 6천석으로 삭

17) 가츠히야쿠에서 가츠히라는 말은 집안을 의미하고 가신단의 의미도 포함, 즉 가츠히야쿠라는 말은 집안일 혹은 가신의 역할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군역뿐만 아니고 토목공사, 행정 역직 등을 포함.

감됐다. 데루모토는 정실 시시도 다카이에(宍戸隆家)의 딸, 측실 고다마 모토요시(児玉元良)의 딸 등이 있고, 이 중 측실 소생에 조슈번 초대 번주 히데나리(秀就), 도쿠야마번(徳山藩) 초대 번주 나리타카(就隆)가 있다. 원래 데루모토는 친자가 없어 히데모토(秀元, 모토나리의 4남의 장남)를 양자로 삼았으나, 후에 친자가 태어나 양자를 취소하고, 히데모토를 분가시켰다(조후번[長府藩]). 지번으로 조후번 8만 2천석(후에 1만석을 분여하여 기요스에번[清末藩]을 세움)·도쿠야마번 4만석·이와쿠니번(岩国藩, 모토나리의 차남 깃카와 모토하루[吉川元春])은 6만석을 두었다. 이들은 모두 내분분지(内分分知), 즉 본가의 오모테다카(表高, 슈인쥬[朱印状]에 표시된 고쿠다카)를 줄이지 않고 신규로 분가를 세우는 것이다. 만약 오모테다카를 줄이어 분가시키면, 가격이 저하되고 막부의 역직 취임 및 관위 등에서 불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내분분지를 채택한다.<sup>18)</sup>

1610년 조슈번의 슈인다키는 36만 9411석이다. 이후 다른 번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네 번이나 검지(檢地)를 실시하여 실제 고쿠다카를 늘려갔다. 다이묘는 전 영지를 직할지인 구라이리치(藏入地)와 가신에게 분여하여 지배케 하는 지교치(知行地, 급지[給地], 영지)로 나눈다. 이 영지와 하쿠쇼를 지배케 하는 것을 지가타치교(地方知行)라 하고 영지를 배령 받는 가신을 급인(給人) 혹은 지교토리(知行取)라고 한다. 이외에 영지가 없고 지교다카(知行高, 영지의 고쿠다카)에 상당하는 연공미(年貢米, 농민이 조세로 공납한 미곡)가 급부되는 우키마이(浮米)가 있다. 우키마이 1백석이면, 연공을 40%를 적용 받으면 40석을 받는다.<sup>19)</sup> 우키마이는 구라이리치에서 지불된다.

18) 野口朋隆(2011), 江戸大名の本来と分家. 東京: 吉川弘文館, 35 참조

19) 연공율은 조세 수취 비율로 가신의 실제 수입(덴뵈)이라고도 함)을 말한다. 이하 편의상 연공율로 표기.

〈표 1〉 하기번 고쿠다카의 변천

연도	총 고쿠다카 (지번령)	총 고쿠다카에서 차지하는 비율/하기 번 지고다카 비율	총 고쿠다카에서 차지하는 비율/하기 번 구라이리치 비율	분겐초/무큐초 인원 수
1613년(연 공율 73할)	539,286석(지번 령 99,300 석, 18.4%)	293,285석 (54.4%)/66.7%	146,700석(27.2%)/33.3%	1622년: 분겐초 870명. 1652년: 분겐초 908명.
1625년(연 공율 5할)	658,299석(지번 령 183,023 석, 27.8%)	265,275석 (40.3%)/55.8%	210,000석(31.9%)/44.2%	1629년:877명/3009명
1686년(연 공율 4할)	818,487석(지번 령 183,022 석, 22.4%)	190,640석 (23.2%)/30%	444,825석(54.3%)/70%	1677년:1,126명/3,741명.
1707년(동 일)	836,021석(지번 령 183,022 석, 21.9%)	203,230석 (24.3%)/31.1%	449,708석(53.8%)/68.9%	1709년:1251명/4,071명
1761-1764 년(동일)	892,976석(지번 령 183,022 석, 20.5%)	217,385석 (24.3%)/30.7%)	491,693석(55%)/69.3%	1783년:1,471명/4,283명.
1851년(동 일)	895,882석(지번 령 183,022 석, 20.4%)	200,037석 (22.3%)/28%	512,822(57.2%)/72%	1855년-1859년:1,498명 /4,344명.

출처: 田中誠二(2013), 41, 171, 183-185, 263, 275, 297, 457 재구성. 元和八年分限帳; 萩藩給祿帳.

이렇게 자주 그리고 엄격하게 검지를 했던 이유는 재정기반 확대 및 재정난 타개를 위한 것이다. 검지 결과 지고다카는 66.7%에서 28%로 감소한 반면에 구라이리치는 33.3%에서 72%로 증가했다. 1625년 검지 이후 가신들의 연공율을 73%에서 50%로 인하하고, 후에 40%로 인하했다.<sup>20)</sup> 이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번은 가신들에게 강제 상납(借知)을 실시하였다. 이 상납에는 지소마이(馳走米, 강제성 헌납), 조긴(助銀, 다비아쿠[旅役]라고도 함, 가신들의 출장과 체류비 및 여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각출), 토목공사 비용(헌납) 등이 있다. 1704년에 50%(半知)를 상납시키었다. 이후 상납은 거의 고정적으로 지속됐다.<sup>21)</sup> 이런 상황에서 1백

20) 田中誠二(2013), 앞의 책. 48.

석의 가신의 실제 수입은 연공을 40%(40석), 상납 50%(20석)이므로 20석이 된다. 급인이 아닌 자는 기본적으로 무큐쇼에 등재되고, 구라이리치에서 후치마이(扶持米) 혹은 기리마이(切米) 혹은 기리센(切錢)을 받는다. 1인 후치마이는 1인의 식량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기번의 경우 1인 후치마이는 1일 5홉(合)으로 1년에 1석 8말(斗)이다. 기리마이란 직무급, 특별 수당 미 혹은 후치마이 형식과는 다른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다. 이외 은, 즉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인데 대개 하급무사, 특히 봉공인에게 지급된다.

## 2. 하기번의 격제

가신단은 기본적으로 군사조직을 기반 한 격제(하기번에서는 도오리[~通]라고도 함)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격제는 조상의 훈공과 유서 및 내력 등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 격제에 따라 격식(가록 및 야쿠카타 취임, 생활 및 의례 서열 등)을 두고 있다. 하기번의 격제는, 이치몬햏케-요리구미-(테마와리구미[御手廻組])-오구미-후나테구미(船手組)-지샤구미(寺社組)-엔킨즈키-무큐도오리-가치-산주닌도오리-(사무라이야토이[土雇])-아시가루-주젠 등이다. 엔킨즈키 이상이 사분이고, 무큐도오리에서 산주닌도오리까지가 준사(準士)격이고, 이하는 잡병과 봉공인이다. 다른 번에도 일반적으로 위와 같이 3단계로 편성되나, 하기번의 엔킨즈키와 같이 애매한 격이 있다.

### 1) 이치몬햏케

하기번의 최고의 가격은 이치몬 6가와 준이치몬(영대가로[永代家老], 즉 영대는 세습의 의미, 이하 영대가로로 표기)이라고 칭하는 마스다씨(12,063석)·모리씨 방계인 후쿠바라씨(11,314석)가 있다. 이 여덟 개 가문을 이치몬햏

21) 田中誠二(2013), 위의 책. 178.

케라고 불리운다. 이치몬은 모토나리 자녀 및 손자, 즉 시시도씨(차녀, 11,329 석)·요시키(吉敷)모리씨(9남 고바야카와 히데카네[小早川秀包], 10,855석)·미기타(右田)모리씨(7남 아마노 모토마사[天野元政], 16,023석)·아사(厚狭)모리씨(8남 스에즈구 모토야스[末次元康], 8,371석)가 있고, 모토나리의 차남인 깃카와 모토하루의 계통인 아가와모리씨(모토하루의 2남 모토우지[元氏], 7,391 석)·오노(大野)모리씨(모토하루의 3남의 3남 나리요리[就頼], 8,618석)가 있다. 대외적으로는 가로로 칭한다.<sup>22)</sup> 원래 이치몬한테는 군단의 총사령관(총봉행[總奉行], 혹은 오구미가시리[大組頭-이하 대조장으로 표기])을 맡고 출진할 때 자기 가신을 이끌고 오구미를 통솔한다. 총봉행에는 요리아이조나에(畜合備, 후술)가 합세하고,<sup>23)</sup> 번의 직할 가신단(오구미 1조, 지사구미, 아시가루 등)을 통솔한다. 평시에 이들은 한 달에 3회에 열리는 중요 회의(요리아이[畜合])에 참석하여 중요서류에 서명·날인하는 가한아쿠를 담당한다. 이 중 다이묘의 참근(參勤)에 호종하는 에도 가한아쿠와 영지에서 근무하는 구니(御國) 가한아쿠가 있다. 이들은 도쇼쿠, 도아쿠와 더불어 가한슈(加判衆, 혹은 봉행소[奉行所])를 구성하였다.<sup>24)</sup>

## 2) 요리구미

요리구미의 시초는 2-3명 고록의 무사(약 1천석 기준)가 합해 요리아이조나에를 편성했던 것에서 비롯됐다. 그 후 요리구미시(寄組士)는 고쿠다카에 따라 소나에를 편성하고, 각 군단의 총봉행인 이치몬한테에 합세(與力)했다.

22) 고바야카와 히데카네(小早川秀包)는 형 고바야카와 다카카게(隆景, 모토나리의 3남)의 양자이고, 아마노 모토마사는 아마노씨의 데릴사위이고, 스에즈구 모토야스는 동복 형 모토아키(元秋, 모토나리 5남, 스키모리[榊]씨의 양자)를 계승하고, 모토우지는 니호(仁保)씨의 데릴사위였으나 후에 한자와(繁沢)씨로 개명했다.

23) 소나에(備)는 독자적으로 작전을 행할 수 있는 기본단위를 말한다.

24) 도쇼쿠는 원래 요리구미 격이 영지에서 재정과 지방행정을 관장하는 최고위직, 후에 이치몬한테가 가세했고, 도아쿠는 원래 요리구미 격이 번주를 호종하고 결재사무를 보좌하고 에도 번주를 관할하는 최고위직, 후에 이치몬한테가 가세했다.

요리구미에는 구미가시라(組頭, 이하 조장으로 표기)를 두지 않고 가로에 직속된다. 혹은 전술한 것처럼, 번의 직할군과는 달리, 몇 가가 합해 요리아이조나에를 편성하는 경우도 있다.<sup>25)</sup> 소나에 내에서는 각 가가 서로 대등한 지위인 동료이고, 별도로 지휘역(관)을 두지 않았다. 이들은 소나에 구성 및 책임자의 선정을 각 가에게 일임했다.<sup>26)</sup> 요리구미격은 처음 23명이었으나, 1722년에는 54명이었고, 1853년경은 62명으로 증가했다.<sup>27)</sup> 인원이 증가한 이유는 분가가 21가가 있고, 후술하는 이바라씨와 같이 번주 측근, 혹은 구치바씨(500석)와 같이 조후번 가신이었다가 번주(요시모토 [吉元], 조후번 번주, 하키번 5대 번주 계승)를 따라 하키번의 가신이 된 자가 있기 때문이다.<sup>28)</sup> 특히 중후기에 신규발탁 된 자 중에는 우키마이가 비교적 많다. 별열록에서 1천석 이상의 요리구미격은, 가타다(堅田, 6,126석)씨, 구니시(国司, 5,600석)씨와 분가1(2,115석), 아와야시(粟屋, 4,915)씨와 분가2(691석/546석), 아마우치(山内, 4,905석)씨와 분가1(1,004석), 마스다씨 분가3(4,096석/1,086석/1,067석), 사세(佐世, 3,997석)씨, 시미즈(清水, 3,710석)씨, 나시와(梨羽, 3,218석)씨, 고다마(3,084석)씨와 분가2(2,243석/683석), 시지(志道, 3,000석)씨와 분가1(660석), 야나기사와(柳沢, 2,803석)씨, 우라(2,721석)씨, 가츠라(桂, 2,584석)씨와 분가1(1,229석), 무라카미(村上, 2,393석, 수군)씨와 분가2(수군 1명/1,655석, 327석) 에노모토(榎本, 2,234석), 이바라(2,102석)씨와 분가1(786석), 신지(宍道, 1,976석)씨, 네고로(根来, 1,591석)씨, 아키 나이토우(1,477석)씨, 스노우 나이토우(1,332석)씨, 아카가와(赤川, 1,228석)씨, 노미(乃美, 1,155석)씨, 와타나베(渡辺, 1,154석)씨, 시시도씨 분가4(1,096석/1,063석/680석/625석), 한자와(1,094석)씨, 후쿠바라씨 분가1(1,065석), 다카스(高洲, 1,019석)씨, 구치바(口羽, 1,018석)씨와 분가2(720석/우키마이 500석), 스키모리(1,013석)씨, 사사키

25) 享保二年(1717년)分限帳 防長回天史 第1篇 46 참조

26) 上田純子(2007), 앞의 글. 176.

27) 防長回天史 第1篇. 46; 享保二年分限帳 규료초 참조

28) 享保二年分限帳 萩藩家系譜 참조

(佐々木, 1,003석)씨, 구마가이(熊谷, 1,000석)씨가 있다.<sup>29)</sup> 여기서 1천석을 기준으로 역직 취임의 차이를 둔다. 1천석 이상일 경우, 반카타로는 각조 오구미의 조장, 데마와리구미(번주를 시중하거나 경호)의 조장 등을 맡고, 야쿠카타로는 도쇼쿠와 도야쿠, 가한야쿠 등을 맡아 1대 가로(세습이 아니고 본인 1대만 가로직에 취임)도 될 수 있다.

### 3) 오구미

오구미는 번주의 직할 부대(본진[本陣])로 기마로 출전하는 무사들(막부로 비교하면 하타모토[旗本])로 이루어졌다. 어느 번에서나 영주인 우마마와리를 중시했다. 그러나 후술하는 것처럼 본래의 무사와 다른 이질적인 존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오구미는 8조로 이루어졌다. 오구미의 핵심은 우마마와리로서 전시에는 말을 타고 번주의 신변을 경호한다. 평시에는 2조가 윤번으로 에도 번저의 경비를 담당하고(이를 반테[番手]라고 함, 귀국하여 1년 휴식), 여섯 개 조는 주로 하기성의 경비와 조카마치(城下町)의 소방 및 치안 등을 담당했다(이를 반야쿠[番役]라고 함).<sup>30)</sup> 에도반테와 토목 공사 등을 하면, 여비 등 제반비용은 자기 부담이기 때문에 부담이 무척 컸다. 하기번에서는 우마마와리를 우마노리슈(馬乘衆)라 불리며 2백석 이상의 무사를 맡하고

29) 1천석 이하, 와치(和智, 845석)씨, 야마다(山田, 829석)씨, 츠치야(土屋, 663석)씨, 히노(日野, 621석)씨, 사사가와(篠川, 518석)씨, 리노이에(李家, 우키마이 500석)씨, 아소누마(阿曾沼, 475석)씨, 무쿠나시(椋梨, 우키마이 448석)씨, 모리(毛利, 우키마이 400석)씨, 구사카리(草刈, 269석)씨, 이이다(飯田, 우키마이 250석)씨가 있다. 그리고 이들의 족보를 보면, 분기라고 표기하지 않고 별가(別家)로 기입된 것이 있다. 무사, 특히 상급가신의 분가와 별가의 개념은 애매모호하다. 일반적으로 분가는 보통 차남 이하에게 가산을 분여하는 것에 비해, 별가는 번주(혹은 주군)에게 발탁 혹은 번주를 섬김에 따라 가록을 받고 새로운 가문을 일으킨 것이다. 그러나 후술하는 이바라 나리다카시(萩尚)의 예처럼 분가와 별가의 개념은 확실하지 않다. 또한 분가 혹은 별가 창출은 우마마와리계 무사의 경우, 번주의 허락이 필요하므로 오히려 별가의 개념이 많이 포함됐다. 본고에서는 이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현대 일본에서 주로 사용하는 분가로 표기한다.

30) 防長回天史 第1篇 46; 山内家文書(山内元資他國自身役目勤仕月數書上) 참조

2백석 미만은 소신슈(小身衆)라고 불렀다.<sup>31)</sup> 그리고 하기번은 160석 이상은 궁, 뗏포, 창 등을 갖춰야 하고, 160석 이하는 궁, 뗏포, 창 이외의 특장(기)의 무기를 갖춰야 한다. 그리고 메이지 유신 후 100석을 기준으로 상사(上士)와 중사(中士)로 구분되고, 萬治制法 24조 전문에 100석 이상 가신의 혼인은 번 주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규정이 있다. 우마마와리 중 200-300석 대 8-9할이 영지가 급부됐고, 100석 미만에서 76%가 우키마이다.<sup>32)</sup> 한 조의 우구미시의 인원수는 시대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1622년에는 약 52명이었지만, 점점 증가되어 1855년에는 약 120명에 달했다. 이들은 오구미반가시라(大組番頭, 부대장격), 쇼닌(證人, 회계 및 출납관리와 출퇴근 관리), 아리부교(槍奉行), 데마와리 모노가시라(手廻り物頭, 데마와리 아시가루를 통할, 데마와리 소속)등을 담당한다. 야쿠카타로는 행정의 주요 책임자 내지 중견(간)간부 등에 취임했다.

#### 4) 기타

엔킨즈키(혹은 엔킨카타[方])는 우마마와리나미(馬廻並[通]), 나미(並)는 원래 부류라는 의미이자 준[準]의 의미, 즉 우마마와리의 대우를 받지만 오구미보다 격이 낮다. 이들의 직무는, 규료초의 작성과 관리, 가신의 조 배치와 역할분배, 가독 상속 등을 작성 및 제출, 출금 부과 및 관리, 포령 등을 맡았다.<sup>33)</sup> 별열록에 29명, 규료초의 분겐초 26명/무큐초 228(200)명이 있고 봉록은 105석-13석이다.<sup>34)</sup> 지샤구미는 유학자, 의사, 화공, (말)수의사, 연극 등의 기예에 종사하는 격이다. 1천석 이상의 요리구미에서 임명된 지샤부교(奉行)는 번 내의 신사(절)와 이들을 통할한다. 조원(組士)은 별열록 19명, 규료초의

31) 森下徹(2012), 앞의 책, 21.

32) 森下徹(2012), 위의 책, 21.

33) 河本福美(2021), 萩藩の分限帳・無給帳と遠近方. 山口県文書館研究紀要, 48, 22.

34) 228(200)명은 228명은 실제 인원수이고 괄호 안은 규료초에서의 정원, 실제 인원수는 인사이동 혹은 정원 초과로 보인다(이하 동일). 이하 4)기타 봉록은 もりのしげり, 291-295 참조

분겐초 51(48명)/무큐초 49(43)명이 있고 봉록은 2백석-14석이다. 데마와리구미는 고쇼슈(小姓衆, 번주의 주변에서 잡무 혹은 경비를 행하는 자)와 고쇼슈 가시라(頭) 등이 있고, 또한 오구미격 이하인 서기, 유학자, 의사, 요리사 등도 있다. 요리구미격 2명이 데마와리구미 가시라를 맡는다. 무큐도오리는 하사(下士)로 영지를 갖고 있지 않고 봉록을 받는 자이다.<sup>35)</sup> 봉록은 후치마이 9인(60석)이하이다. 전시에 군수품의 호위를 맡고, 평시에 일반 행정 사무를 담당한다. 이들 책임자는 오구미격이 담당한다. 별열록 48명, 규료초의 분겐초 44명(51명)/무큐초 536명(488명)이 있다. 가치(徒)는 번주가 행차 혹은 참근교대할 때 수행하는 자이다. 이들 책임자는 오구미격 담당한다. 별열록 9명, 규료초의 분겐초 5명/무큐초148명(103명)이 있다. 봉록은 후치마이 5인(20석)이하이다. 그리고 산주년도오리는 원래 30인을 의미하지만, 규료초의 분겐초 4명/무큐초 62(49)명이 있고 봉록은 후치마이 4인(20석)이하이다. 사무라이 야토이는 세습되지 않고 본인 1대에 한정된 사무라이로 봉록은 후치마이 3인(10석)이하이다.<sup>36)</sup> 아시가루는 데마와리 아시가루 6조, 오구미 소속의 유미(弓) 아시가루 5조(1조 21명), 뎃포 아시가루 20조(1조 21 혹은 25명)가 있다. 萬治制法の 物頭可相心得事에 “요시다쇼(吉田莊)이래(즉 모리씨가 낙향한 때) 아시가루의 혈통이 있는 자는 후계자(跡職)로 채용하라.” 이는 대부분의 번에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았던 것과는 대비된다. 각 조마다 아시가루의 대장인 모노가시라(物頭, 오구미격이 담당)가 있고, 모노가시라를 총괄하는 자는 1천 석 이상의 요리구미이다. 아시가루 이하는 봉공인이라고 할 수 있다. 아시가루는 전투원인 것에 비해 이들은 비전투원이다. 이들은 보통 전쟁 시에 주군의 무기를 짊어지기도 하고, 특히 이 중 주겐의 업무는 말단에서 후방보급 및 짐꾼(징발된 자 등)을 관리한다. 평소에 야쿠쇼에서 하급관리를 맡는 등 다양하고, 인원수가 대략 (규료초)1300여명이 있다. 이외에도 가마꾼, 사형 집행인, 직인, 세공인 등이 있다.

35) 防長回天史 第1篇 47.

36) 県史編さん室(2012). 「土雇」として仕えた人々. 山口県史だより, 29, 3.

### III. 가신단의 구조와 문화

#### 1. 이치몬햇케

##### 1) 가독 상속

1704-1711년에 지번령을 제외한 전체 가신 지고다카는 약 20만 3천석이 다(24.3%). 이중 이치몬햇케의 고쿠다카는 85,964석으로 42%를 차지하고 있다. 이치몬햇케 체제가 완성된 후, 이들 중 고쿠다카가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가증 혹은 전술한 네 차례의 검지 혹은 간척 등으로 인하여 고쿠다카가 증가한 가문도 있다. 또한 설령 번주와의 대립 혹은 갈등이 있어도, 이치몬은 영지 몰수 혹은 가문 단절이라는 조치를 받지 않았다. 이런 경우는 당주의 은거, 예를 들면, 후술하는 번주 시게타카(重就)와 이치몬의 대립 중에 번주는 시시도씨와 아사 모리씨 당주에게 은거 명령을 내렸다. 이 때 가독 계승자의 나이를 보면, 시시도씨 12세, 아가와 모리씨 8세, 아사 모리씨 22세였다.<sup>37)</sup> 번주는 이들의 가독 상속 청원을 받아들이고, 또한 유소 감지제(幼少減知制)도 적용하지 않았다. 유소 감지제는 번 혹은 시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나이가 어리면 봉공능력이 없다고 해서 전부 상속 받는 것이 아니고 일부 삭감되는 것이다. 이치몬에서 유소 감지제가 적용된 것은 극히 드물다. 설령 삭감되더라도 성년이 되면 원래의 고쿠다카로 회복되는 것이 관례이다. 여기서 아가와 모리씨를 예로 들면, 13대 당주 히로노리(熙德)는 한 살 때 가독을 상속했다. 따라서 785여석이 감소됐다가 6세 때 250석이 회복되고,<sup>38)</sup> 시대는 불분명하지만 그 후 원래 고쿠다카를 회복했다. 이는 이치몬뿐만 아니라 영대가로도 적용됐다. 예를 들면, 마스다씨 23대·24대 당주는 각각 6세와 4세에 가독을 상속했지만, 이들 유소 감지제에 관한 구체적인 변동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이

37) 根本みなみ(2018), 앞의 책, 121-122 참조

38) 豊埜町史, 342 참조

가문의 고쿠다카는 변동이 없었다. 특히 24대 당주는 말기양자였다.<sup>39)</sup> 말기양자는 임종 때 급하게 양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萬治制法 25조 1항에, “말기양자는...본래의 고쿠다카(本知)에서 2분의 1 혹은 3분의 1만을 인정하다.” 이런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영대가로는 가독 상속에서 이치몬과 차별 없이 평등한 대우를 받았다. 또한 번은 가문에 후사가 없어도 가문을 단절시키지 아니하고, 주로 이치몬한테 혹은 계보적으로 동일한 가격인 지번주의 자녀 중에서 양자를 들이여 가문을 잇게 했다. 그리고 이들은 가문간의 인연 혹은 번주의 안배 등에 의해 격이 낮은 요리구미격에서 양자를 들이기도 했다. 이치몬한테와 같은 상급가신의 가문에는 양자로 오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고 번주의 특별한 배려로 인해 가문 단절이 없었다. 여기서 もりのしげり 등의 자료를 분석해 보면, 아가와 모리씨를 제외하고 모두 5대 이내에 양자와 데릴사위가 아니면 가독이 이어질 수 없었고, 심지어 혈통이 끊긴 가문도 있었다. 데릴사위 출신인 당주만을 살펴보면, 시시도씨 10명 중 2명·미기타 모리씨 12명 중 3명·아사 모리씨 11명 중 2명·요시키 모리씨 14명 중 2명·아가와 모리씨 13명 중 1명·오노 모리씨 9명 중 1명·마스다씨 14명 중 4명·후쿠바라씨 10명 중 1명이다. 하기번의 다른 번에 비해, 고모(예를 들면, 아사 모리씨 7대 당주) 혹은 숙모(예를 들면, 후쿠바라씨 18대 당주) 혹은 누이의 시집(친정) 식구 혹은 그 자식들을 친정(시집)의 양자나 데릴사위 양자를 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시시도씨와 같이 하기번은 여식을 이치몬에 포함시킨 것도 또 다른 특징이다. 그리고 위의 아가와 모리씨, 은거한 6대 당주는 첩(家女房) 소생이다.<sup>40)</sup> 근세 일본에서는 보통 정실의 장남 혹은 양자 1명에게만 가독상속을 시키지만, 제도적으로 적서 차별이 없어 정실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첩 소생을 적자로 삼는 경우도 있다. 위의 특혜뿐만 아니라 이들 가문에게는 분가 창출과 가명 상속이라는 특권이 부여됐다. 미기타 모리씨는 아마노 모토마사의 차남 오구미격 아마노씨·3남 요리구미격 아소누마씨를 계승했고, 아가

39) 享保二年分限帳 萩藩家系譜 참조

40) 阿川毛利譜録 참조

와 모리씨는 모토우지의 차남이 한자와씨를 상속했다. 그리고 시시도씨 요리구미격 분가 4개, 마스다씨는 요리구미격 분가 3개, 후쿠바라씨는 요리구미격 분가 1개가 있다. 이들 가문을 포함한 이치몬핫케가 전체 지교다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49%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치몬핫케가 동일한 특권이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내부 구조와 관계 등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 2) 이치몬핫케의 관계

이치몬과 영대 가로는 가독 상속과 역직 취임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았지만, 모리씨 가정(家政)과 관련된 사항과 의례적인 측면에서 이치몬이 영대가로 보다 더 많은 우대 혹은 특권을 가졌다. 그리고 분젠초의 기재 순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치몬 내부에는 서열이 존재한다. 그 서열은 시시도씨-미기타 모리씨-아사모리씨-요시키모리씨-아가와모리씨-오노모리씨이다. 이 서열의 기준은 고쿠다카보다는 모토나리와의 계보관계에서 비롯됐고, 또한 일본의 이에(家)의 원리에 따라 서열을 두었다. 다시 말하면, 아가와는 모토나리에게는 손자분가, 오노가는 증손자분가이다. 따라서 번에서는 이치몬을 동일한 위치로 대우하려함에도 불구하고, 미기타와 요시키 모리씨 등은 깃카와씨와 계보 관계를 갖는 아가와와 오노 모리씨와 차별을 두려고 했다.<sup>41)</sup> 그러나 위와 같은 서열과 차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관계는 약간 차이가 있다. 이치몬핫케 사이에서 혼인 및 차남이하의 양자 관계는 빈번이 이루어지나, 가독을 계승할 양자나 데릴사위는 각 가문 간의 관계에 따라 미묘한 차이가 있다. 미기타아사요시키 모리씨 사이에는 가독을 계승할 양자나 데릴사위 관계 맺기가 활발히 이루어진 반면에, 시시도씨는 이들과 별로 관계가 없다. 그 이유는 시시도 가문은 필두격인 이치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요리구미격인 양자를 통해 가독 상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16대 당주가 후사 없이 사망하자

41) 根本みなみ(2018), 위의 책. 156.

그의 친동생 구마가이 모토자네(熊谷元実, 데릴사위)의 장남(17대)이 가독을 상속했지만, 그도 후사가 없어 동생(18대)이 가독을 상속했다. 그러나 18대도 후사가 없어 모토자네의 차남의 장남(19대)이 가독을 상속했다. 그러나 그도 후사가 없어 조카(20대)가 가독을 상속했다. 그리고 23대는 21대 당주의 딸(후쿠바라씨의 정실)의 아들이 가독을 상속했다.

위와 같이 이치몬 각 가문 간에 서열과 관계의 차이가 있지만, 이들은 공통의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가독권 유지를 위해 단결도 하였다. 예를 들면, 하기번은 4대 때 (직계)부계 혈통이 끊겨 분가인 지번의 번주 출신이 번주가 됐다. 5대 번주 요시모토는 조후번 출신, 7대 번주 시게타키는 원래 분가의 분가인 기요스에번 출신이다. 시게타키의 친형이 당주로 있는 미기타 모리씨를 제외한 이치몬 대부분은 시게타키의 정당성에 대해 문제시하고, 더구나 시게타카가 자기 아들(후의 마사미츠[匡滿])을 적자로 세우려고 하자 이치몬은 본가의 모계 혈통을 지니고 6대 번주의 유언에 따라 데릴사위가 된 시게히로(重広)를 내세웠다.<sup>42)</sup> 또 다른 예로, 10대 번주 나리히로(齊熙)는 후쿠바라 후사 마사(房昌)를 데릴사위로 들이고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다. 원래 번주 형제의 양가는 이치몬으로 제한됐다. 또한 만일 번주의 후계자가 없을 경우, 이치몬에서 후계자를 보낸다. 따라서 이치몬은 후사마사가 후쿠바라씨의 양자로 보내는 것에 반대했고, 더구나 후쿠바라씨에 양자로 갔던 자가 번주의 후계자 후보가 되자 격렬하게 반대했다.<sup>43)</sup> 이는 이치몬이 영대가로와 차별화를 통해

42) 시게타키와 가신과의 대립을 보면, 시게타키는 이치몬이 주장하는 선례 중시 가풍(先例舊格家風)에 대해 조상의 고법(祖宗之古法)으로 맞서고, 이치몬 3개 가문의 당주를 은거시켰다. 양자인 시게히로가 급사하고, 정실 소생이자 사남인 하루치카(治親, 본번 8대 번주)를 후계자로 삼고, 측실 소생이자 장남인 마사미츠는 조후번의 9대 번주로 삼았다. 根本みなみ(2018), 위의 책, 50. 다른 번에서도 양자의 혈통 문제와 정당성 및 그의 행동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 예를 들면, 오카야마 번에서 9대 모치마사(茂政)는 가신들의 공갈 협박 등의 퇴진 압력에 의해 은거를 했다. 磯田道史(2010), 幕末維新期の家老合意と御前會議 岡山藩研究會 編 藩世界と近世社會. 東京:岩田書院, 49-77 참조. 그리고 아와번(阿波藩)에서 가신들이 번주(蜂須賀重勳)를 오시코미하자, 결국 막부에서 개입하여 번주를 은거시켰다. 笠谷和比古(2006), 앞의 책, 21-60 참조. 이들 가신들은 양가의 전통, 선례, 인륜의 도(道)를 내세워 번주를 공격했다.

43) 根本みなみ(2018), 앞의 책, 218.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이고 또한 공동의 이해관계에서는 서로 단결도 했다. 또한, 이는 이들이 번(주)에 대해 모토나리 자녀 출신 가문이라는 어느 정도의 특권적 지분, 혹은 상대적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준다.

### 3) 군역의 문제

위와 같은 영지와 특혜(권)는 번주와 가신의 주종관계를 형성하는 기제, 즉 어은(은혜)과 봉공이다. 이와 같은 관계는 마스다씨의 예에서도 나타난다. 牛庵様御時代覚書에서, “모리씨의 후다이(譜代, 대대로 그 주군을 섬기어 온 집안 혹은 사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와미(石見)의 사람에게 남게 하여 봉공케 해 주셨다...근년 데루모토 공이 상당히 많은 영지를 주셨다.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일신을 바치겠다.”라고 서술했다.<sup>44)</sup> 萬治制法 3조에 기재되었듯이 가신으로서 제일 중요한 봉공은 군역이다. 특히 군역에서 가신단 혹은 배신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간에이(寬永, 1624년-1644년)기간 100석 당 2.3명, 덴포(天保, 1830년-1844년)기간 2명의 배신을 두어야 한다.<sup>45)</sup> 이 규정을 따르면, 마스다씨는 각각 276명, 240명이다. 그러나 마스다 가신은 군역 규정을 훨씬 초과한 476명이다. 여기서 마스다씨의 가신단의 격제를 살펴보면, 마치 번의 축소판과 같이 가료(5명)-오구미(42명)-데마와리구미(76명)-고쿠미(小組) 네 개의 조-주켄 등 봉공인으로 구성됐다.<sup>46)</sup> 번의 오구미에 상응에 해당하는 고쿠미를 살펴보면, 1개 조는 오구미에서 선발되는 조장을 제외하고 대략 53명-55명, 사무라이(약 25명, 14석:4명-5명, 9석:10명-12명, 7석:8명)와 주켄(약 3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중하급 가신으로 편성된 군사조직으로 유사시 전

44) 牛庵様御時代覚書는 1630년대 후세가 중흥의 시조인 모토나카의 업적을 기록한 것으로, 과장된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어은과 봉공을 강조하고 있다. 후다이는 대대로 같은 주군, 집안을 섬기는 일이나 또는 그 사람을 말한다.

45) 防長回天史, 41.

46) 이의 의사(8명), 마구간(41명), 출산소(御産所 51명), 선장(8명), 직인(30명), 구미하즈레(組外, 3명)가 있다. 御家来御人数石高之: 四組人高其外覚書참조

쟁이 발발하면 전쟁에 임한다. 평소에는 번의 경계 지역에 기반을 두고 생활 하면서 농사를 짓고 또한 국경(즉 번의 경계)을 지켰다.

마스다씨의 영지는 번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경비를 위해 4개 조를 두었지만, 번의 경계에 있지 않은 다른 이치몬, 예를 들면, 아가와 모리씨의 직제는 조금 다르다. 그 직제는 가로-주신도오라-소신도오리(小臣通)-무큐도오리로 편성됐다. 가신은 처음 52명에서 시작하여, 17세기 후반 103명, 18세기 후반 186명, 메이지 초 211명으로 증가했다.<sup>47)</sup> 211명의 거주 지역을 보면, 영지의 중심인 아가와 102명과 하기 15명, 그 밖의 영지에서 영지의 크기에 따른 인원이 거주했다.<sup>48)</sup> 마스다씨의 가신의 배치는 번의 경계 경비를 중시한 것과는 달리, 이들은 주로 기츠타쿠와 영지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치몬은 중책을 맡고, 특히 에도 체류가 많았으므로 막대한 경비가 필요했다. 1685년 검약령에 따라 에도 수행인원을 간소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168명이 있었고, 또한 에도 체류 경비는 하기 보다 20배 이상이었다.<sup>49)</sup> 여기서 군역과 관련하여 아가와 모리씨와 그 가신의 경제상황을 살펴본다. 1843년 아가와 모리씨의 고쿠다카 7,625여석에서 가신 봉록 3,122여석(약 40%)을 제외하면,<sup>50)</sup> 4,503석에 연공을 40%를 적용하면 1,801석이 남는다. 그런데 1688년에서 1704년까지 번에서는 가신들에게 1백석 당 16석, 80석 이상은 13.5석, 40석 이상은 13석, 10석 이상은 10석 당 0.8석, 아시가루 이하는 0.2석을 상납케 했다.<sup>51)</sup> 더구나 17세기 초부터 거의 모든 시기에 고쿠다카의 50%를 상납해야 했으므로 아가와 모리씨는 약 900석이 남는다. 여기에 조긴은 100석당 5석이었으므로 381.25석을 헌납해야 했다. 따라서 아가와 모리씨의 실제 수입은 약 519석이다. 일상적 경비 비목은 거의 <표2>와 비슷하나, 아가와 모리씨는 에도 수행인원수가 많았고 또한 체류 기간도 길었고, 하녀 및 주젠 등이 많았고, 격 혹

47) 豊北町史, 303.

48) 豊北町史, 301-310 참조.

49) 豊北町史, 333.

50) 豊北町史, 344.

51) 田中誠二(2013), 앞의 책, 173.

은 체면에 맞는 생활습관과 인간관계 및 의례 등으로 인하여 이바라씨 보다 더 많은 경비가 필요했다. 아가와 모리씨 가신 164명의 고쿠다카를 보면, 가로 3명(123석, 121석, 64석), 70석-80석 1명, 50석-60석 1명, 40석-50석 4명, 30석-40석 15명, 20석-30석 31명, 10석-20석 48명, 5석-10석 43명, 1석-5석 16명, 0석-1석 3명이 있다.<sup>52)</sup> 이들의 상납과 조긴도 번(가신) 차원의 계산법과 동일하다. 이들은 봉록으로는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 자급자족을 행하고, 특히 하급 가신은 목수 혹은 세공 등의 부업을 했다.<sup>53)</sup> 위와 같은 상황에서 군사를 동원하고 훈련시키기는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sup>54)</sup> 일상적인 역인가추야쿠도 이행하기가 어렵다. 재정난을 타개 위하여 행한 조치, 첫째, 검약령을 내리는 것이다. 둘째, 아가와 모리씨는 17세기 중반부터 빚을 얻었다. 17세기 후반 가신들의 부채가 100석당 약 75석(2간[貫] 500 문메[匁])이고, 연이자율이 12%이다.<sup>55)</sup> 그래서 아가와 모리씨는 빚을 갚기 위해 1727년부터 자주 인전성(引田成)과 겐쇼고쿠(減少石)라는 제도를 활용했다. 인전성은 번이 부채를 대신 맡는 동안에 이치몬의 공적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고,<sup>56)</sup> 겐쇼고쿠는 부채와 가계곤란 상황 등을 해결하기 위해 영지 전부가 아니고 일부분을 번에 상납하여 부채처리를 맡기는 것이다.<sup>57)</sup> 셋째, 역직을 맡으려고 하지 않았다. 아가와 모리씨는 1717년부터 자주 역직을 면제해달라는 청원을 올렸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sup>58)</sup> 넷째, 은을 헌납한 자를 가신으로 채용하는 것이다.<sup>59)</sup> 거의 모든 시기에 위와 같은 조치가 취했지만, 특히, 전술한 것처럼, 17

52) 豊北町史. 310 참조

53) 豊北町史. 344.

54) 1843년 시마바라(島原, 1637년)난 이후 처음으로 대대적인 군사 동원(총인원 14,332명)과 훈련을 행했다. 2군단 대조장 아가와 모리씨 차카히코(親倫)의 종자는 415명이었다. 이 당시 군사 훈련과 준비는 전혀 안됐고, 1830년대에는 위와 같은 문제가 극에 달했다. 防長回天史. 第1篇. 311-320.

55) 田中誠二 (2013), 앞의 책. 191.

56) 아가와 모리씨의 인전성에 관한 내용은 豊北町史. 355, 337, 340 참조

57) 아가와 모리씨의 겐쇼고쿠는 250석이다. 豊北町史. 340.

58) 豊北町史. 334.

59) 豊北町史. 334, 336, 340, 342 참조

세기 후반(103명)과 18세기 후반(186명)에 대규모 채용이 이루어졌다. 또한 은을 헌납하면 소신도오리에서 주신도오리로 승격시키고,<sup>60)</sup> 농민이 은을 헌납하면 무사의 상징인 다이토(帶刀)와 묘지(名字) 사용을 허락했다.<sup>61)</sup>

## 2. 요리구미

### 1) 가독 상속과 분가 창출

요리구미 총 고쿠다카는 9만 1천 27석으로 전체 고쿠다카에서 약 44%를 차지한다. 이 중 모리씨의 방계 등이 19,009석으로 약 21%를 차지하고,<sup>62)</sup> 여기에 인척 11,809석을 포함하면 약 30,818석으로 약 34%를 차지한다.<sup>63)</sup> 만약 번(당)주의 자녀들과의 인척관계 등을 포함하면 이 비율은 더 올라간다. 모리씨는 8개국을 영유했던 만큼 가신단의 출신과 지역이 다양하다. 모리씨의 후다이(후)는 2개 혹은 3개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는 모리 도키치카(時親)가 아키(安芸)에 하향했을 때 수종한 피관(被官), 와카토우 등이다. 이들은 아카가와씨, 와타나베씨, 고다마씨, 아와야시씨와 이이다씨이다.<sup>64)</sup> 2단계는 아키에 하향하고서 신종한 소영주이다. 이들은 구니시씨, 구마가이씨이다. 3단계는 이바라씨, 아키 나이토우씨, 아마다씨이다. 이들 후다이 외에 모리씨 가신이 있고, 보통 도자마(外様, 외부인)라고 칭하는 오우치(大内)씨와 아나코(尼子)씨 가신 출신이 있고, 고쿠진(国人, 재지 영주 혹은 토호 및 재지 무사) 및 고바이카 방계와 가신 출신 등이 있다. 데루모토와의 특수 관계인 마스다씨

60) 豊北町史. 334.

61) 阿川毛利家沙汰書 참조.

62) 모리씨 방계는 후쿠바라씨·시지씨와 시지씨의 분가인 구치바씨·가츠라씨가 있고, 사실상의 모리씨는 가타다씨(미기타 모리씨의 3남이 가독 상속)·한자와씨·스기모리씨(모리씨의 방계인 시지씨가 가독 상속)·아소누마씨가 있다.

63) 격제가 기본적으로 형성된 모토나라부터 데루모토까지 번주의 정실과 측실 등을 기준으로 한 인척은, 시시도씨·고다마씨·노미씨·스노우 나이토우씨·사사키씨가 있다.

64) もりのしげり. 239.

제외하면, 후다이와 친인척 출신만이 분가인 요리구미를 창출했고, 후술하는 오구미 무사도 이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여기서 이바라씨의 예를 들어 요리구미의 창출 과정을 분석한다. 모토요시(元良, 彦右衛門)는 장남 모토다카시(元尙), 차남 모토모치(元以, 1642년 사망), 삼남 모토토시(元歳, 1655년 사망)가 있다. 장남은 스오우 구니(周防国)로 전봉되어 이바라 미오(三尾氏)씨라고 칭하고, 차남 모토모치(加賀守)가 이바라씨(5458석)를 계승하였다. 그는 적자 나리유키(就行)에 가독을 물려주고, 차남 나리히사(就久)에게는 2천석을 주고 분가시켰다. 그러나 2천석은 나리히사가 형보다 일찍 사망하고 또한 자식이 없어 형에게 반환됐다. 나리유키는 아들이 없고 양녀(친부: 나리히사, 친모: 노미씨)만 있어 말기양자로 데릴사위를 들어왔다. 데릴사위는 동생 모토토시의 외손자이자 나리토시(就俊)의 양자 모치마사(以昌)이다. 이때 말기양자 법률을 적용 받아 3천석으로 되고, 모치마사도 후사가 없어 말기양자 히로다카(廣高)가 계승하여 2천석으로 감소했다. 이후 약간의 변동이 있지만, 2,100여석 안팎이다.<sup>65)</sup> 우선, 모토토시의 자손 (786석)의 요리구미격(1697년)이 되어가는 과정을 분석한다.

부친인 마고자에몽 영지, 보슈 사바군 도쿠지 구역에 525석 1말, 같은 요시키군 아이오촌에 190석 6말 5되 5홉, 같은 (요시키)군 오사바(촌) 영지에 66석 4말 7되 8홉, 총 782석 2말 7되 여(余), 이를 양여한다는 것을 승낙했다. 전 영지를 관리하고 과역을 소홀하지 말고 봉공을 다하라. 상기 기재와 같음.<sup>66)</sup>

여기서 안도(安堵)는 가독상속에 따른 영지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때 번주가 화압을 사용해서 하달한 문서를 한모쓰(判物)라고 한

65) 大和町史, 304-306.

66) 父孫左衛門堀次郎, 防州佐波郡徳地之内五百式拾五石壹斗, 同吉敷郡秋穂村之内百九拾石六斗五升五合, 同郡刈崎之内六十六石四斗七升八合, 合七百八十式石式斗七升余之地之事, 讓与之通聞届畢, 全令領知役儀無緩可抽奉公之忠也, 仍一行如件. 元和八年十月廿八日 毛利輝元(花押) 毛利秀就(花押). 井原与三郎殿 출처: 毛利輝元 毛利秀就連署安堵状.

다. 번주는 모토토시가 적자 모토요시(元良, 与三郎)에게 가독을 상속 하겠다는 내용의 청원을 보고 인정, 전 영지(782여석)의 상속을 허락하니, 봉공을 다 하라 라는 내용이다. 이 사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후다이이고 가격이 높을 수록 실자에게 그대로 상속됐다. 그리고 모토요시는 1652년경에 요리구미격이 됐다. 그런데 이와는 별도로, 모토토시는 모토요시에게 가독을 물려주고, 자신은 별도로 데루모토에게 은거령 8백석을 받았다. 적자 모토요시는 1629년 사망, 모토요시에게는 아들 나리토시와 나리다카시(就尙)가 있었다. 모토토시는 자신의 영지 8백석을 나리토시에게 양도하고, 나리토시의 영지에서 5백석을 차남 나리다카시에게 주고 싶다는 것을 번에 출원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형 나리토시(세이키치 영지)에게 5백석이 있는데, 이를 그 쪽에 주고자 한다. 전 영지를 관리하고 봉공을 다하라. 상기 기재와 같음.<sup>67)</sup>

형 나리토시의 영지 5백석을 나리다카시에게 급여(宛行)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당시 차남이하에게 영지를 주었다는 것이다. 萬治制法 제26조에, “당가에서는 후다이 혈통은 근본이 분명하여 이삼남 등을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는 혈통을 중시하고, 공평무사하게 검토하여 도시요리(年壽, 가한슈를 말함)에게 제출하라”. 그런데 사료에 의하면, 나리다카시는 1632년에 관례(元服)을 치렀다.<sup>68)</sup> 이와 같이 나리다카시는 유소감지제의 적용을 받지 안했을 뿐만 아니라 차남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상속을 받았다. 이는 조상의 훈공도 있고 조부가 번주 측근이었기 때문이다. 번주의 측근이라는 점이 작용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후손들을 보면 알 수 있다. 나리타카시 계통은 오구미였는데, 享保元年分限帳에 의하면(아래 인용문의 나리다카시

67) 兄清吉知行五白石之事, 对其方宛行畢, 全令領知可抽奉公之忠也, 仍一行如件. 寬永八年卯月五日 毛利秀就 井原新發知殿. 출처: 毛利秀就安堵狀.

68) 毛利秀就加冠狀 참조

의 데릴사위 이바라 고로자에몬(井原五郎左衛門) 요리구미격으로 승격되고 毛利氏加判衆連署奉書<井原吉十郎>에 의하면 고쿠다가가 605여석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1804년-1830년대의 萩城下町絵図に見る分限帳에 의하면, 이 가문은 다시 오구미로 격하되고 고쿠다가도 270석으로 줄어들었다. 근세 초기를 제외하고 중후기에, 이와 같이 격의 상승과 하락, 고쿠다가가 늘어났다가 50%이상 줄어드는 것은 극히 예외적이다. 중죄에 의한 가문 단절과 재흥, 혹은 과오에 의한 고쿠다가 삭감, 혹은 번(주)의 허락 하에 영지 매매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독상속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타당하다. 다시 말하면, 고쿠다가의 감소는 모토모치의 계통(가문)처럼 말기 양자 상속 혹은 유소 감지제의 적용을 받았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런데 전술한 것처럼, 후다이 가문이라면 설령 유소 감지제 및 말기 양자의 상속 등에 의해서 고쿠다가가 감소 됐더라도 원래의 고쿠다카로 회복되는 것이 관례인데,<sup>69)</sup> 규료초에서도 이 가문은 여전히 오구미 270석이다. 이 가문은 엄밀한 의미에서 삼남(별가) 출신이라 후다이라고 할 수 없고,<sup>70)</sup> 또한 모토토시(1655년 사망)와 같은 번주 측근이나 고위 역직에 취임한 자도 없었다.

## 2) 군역의 문제

여기서 나리토시 계통인 모토토시(元俊) 대의 경제 상황을 통해 군역 및 가쥬역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모토토시는 모치마사의 말기 양자인 히로다카의 삼남이자, 전 당주 히로토시(廣俊)의 데릴사위이다. 이 가문의 고쿠다카는

69) 예를 들면, 가타다 나리마사(堅田稊政, 부친은 가타다 모토요시[堅田元慶]로 아와야 모토미치[粟屋元通]의 차남, 가타다씨의 시조)는 1625년(13세) 유소 감지제의 적용을 받아 2천여석이 삭감되어 4,500석을 상속 받았다. 萩藩城下町の絵図に見る人名簿及び住所録 참조. 사료의 제한으로 언제 원래의 고쿠다카로 회복됐는지 알 수 없지만, 그의 손자 히로요시(廣慶, 부친 데릴사위)는 6,162석이다. 그리고 이 히로요시의 가독을 상속한 것은 동생이고, 그 후로는 대부분 이성(異姓)양자이고 가독 상속이 순탄하지 않았으나 고쿠다카는 여전히 6,162석이다. 萩城下町絵図に見る分限帳, 萩藩家系譜 참조.

70) 萩藩主要役職者年表 참조.

모토요시 대 782여석, 나리토시 대는 조부의 800석을 상속하고 간척해서 70여석이 증가되고 또한 200석이 가증되어 총 1천 70여석,<sup>71)</sup> 히로토시 대는 786여석과 우키마이,<sup>72)</sup> 1823년에 700석(겐쇼고쿠, 86여석),<sup>73)</sup> 1851년경은 786여석(이 중 우키마이 86여석)이 됐다.<sup>74)</sup>

〈표 2〉 이바라씨의 수입과 지출

	비목	쌀(석)	은(몬메)	비고
수입		408.73708	1,755.302	1,070.278석(영지의 고쿠다카 870여석, 우키마이 200석). 연공율이 40%, 부가세(口米) 3%와 중자 대여 이자비 등이다. 영지 두 곳의 논(약 722석)에서 각각 45%와 46%를 적용하여 328.73708석, 여기에 우키마이 80석(40% 적용)이다. 영지 두 곳의 밭에서 1,299.42몬메, 잡세(小物成) 466.082몬메이다.
지출	당주 가족의 의식비용	65.9600		삼대 5인의 식사, 부식, 의류, 손님 접대비 등
	배신 기리마이(切米)	50.6000		배신 10인과 절(海雲寺)
	배신 정기 후치마이(定扶持)	18.0000		0.15석×12개월×10인
	하녀·주켄 후치마이	20.1600		
	하녀 기리센(切錢)		179.0000	
	주켄 급료		800.0000	100몬메×10인
	보너스 및 장려금(足米)	1.6000		
	난방비 및 일상용품 등		1,049.6700	숯, 양초, 장작, 된장 및 소금, 붓 등 문방구, 우비 등을 별도 항목 기재했으나 생략.
	말 사료		450.0000	

71) 小幡村史, 118. 200석은 간척지로 보고 있으나 전후 맥락상 우키마이이다.

72) 閔閱錄 井原孫左衛門廣俊 참조.

73) 萩城下町絵図に見る分限帳 참조.

74) 小幡村史, 119.

	일용 고용자		300.0000	
	연말(歲暮)	3.2000	250.0000	
	당역 수고비 등	1.4400		당역(當役)은 배신 중 가정(家政) 일을 담당하는 최고 직.
	집 수리비 총당금	18.0000		수리 및 다다미 등의 총당금 혹은 예비금
	영지 사무소 관계 비용	5.5450		
	불교 관계 및 연중행사	3.1372	268.1890	별도 항목으로 기재됐으나 생략
	기타 및 임시 비용	4.0300	100.0000	기타 비용 4.0300석, 임시 비용 100.0000
	지출과 차액	191.67220/ 184.23374	3,396.859/ 적자 1,641.557	은의 부족을 쌀 32석으로 보충(2석 당은 100몬메), 쌀 184여석이 남음.

출처: 山口県史 近世(通史編). 181-184.

위의 표에서는 지소마이와 조건을 기재하지 않았다. 대신에 이를 다비아 쿠다시마이(旅役出米)라고 칭하고 여러 가지를 상정하여 대응했다. 우선, 조건은 100석당 5석이었으므로 53.51390석을 제하면, 차액은 130.71984석이다. 1745년-1749년간의 지소마이는 100석당 각각 20석·12석·11석·11석·10석이었다. 12석(128·43336석)을 경계로 적자와 흑자로 갈라졌다.<sup>75)</sup> 1768년부터 지소마이가 거의 50%이고,<sup>76)</sup> 더구나 이 당시 전국적으로 인건비가 오르고,<sup>77)</sup> 또한 전술한 것처럼 부채와 이자가 많아졌다. 사료의 제한으로 언제부터 겐쇼 고쿠가 시작 됐는지 알 수 없으나 이바라씨는 1823년에 겐쇼고쿠가 있다.<sup>78)</sup> 하기번은 겐쇼고쿠 외에도 자이고주타쿠(在郷住宅)가 있다. 이는 일정의 연한과 회수를 정해 영지 혹은 연고가 있는 촌에서 주거하고, 검소한 생활을 통해 가계를 다시 일으키는 것이다.<sup>79)</sup> 이런 제도를 운영했다는 것은 가신들의

75) 山口県史 近世(通史編). 174-175 참조.

76) 田中誠二(2013), 앞의 책. 264-266.

77) 磯田道史(2003), 앞의 책. 337-338.

78) 萩城下町絵図に見る分限帳 참조.

79) 森下徹(2012), 앞의 책. 89. 치안과 소방 업무 등이 면제 되고 성 경비 때만 하기에 거주.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가신의 의무인 군역과 가추역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음을 반증하고 있다. 이들이 택한 방법을 우라씨의 예를 들면, 배신 혹은 봉공인에게 급료를 지불하지 않고, 군역인원수를 확보하기 위해 배신의 배신(又者)과 그의 부자형제를 동원하고, 무가 봉공인에게 현금(납)을 통해 사분격으로 승격시키는 것이었다. 무가 봉공인, 심지어 우와마리격도 주식화(株化)가 되어 매매가 가능했다.<sup>80)</sup> 사료의 제한으로 이바라씨의 배신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이바라씨의 영지인 오사바촌사 小鯖村史에 의하면, 촌역인 중에서 근공이 있거나 쌀과 금전을 기부하면 다이토와 묘지를 사용을 허락하고, 또한 매매가 가능했다. 그리고 촌역인뿐만 아니라 배신의 지위도 매매가 이루어졌다.<sup>81)</sup> 이런 점을 비춰 볼 때, 이바라씨도 헌납과 배신 지위의 매매라는 방법을 통해 재정난을 해결했다.

### 3. 오구미

#### 1) 가독 상속과 분가 창출

오구미의 한 개 조의 평균 인원수를 살펴보면, 1622년 평균 52.6명(이 당시 여섯 개 조),<sup>82)</sup> 1651년 83명(이 당시 여덟 개 조),<sup>83)</sup> 1717년 약 114명,<sup>84)</sup> 1855년에 약 120명(규료초)이다. 여기서 1651년과 1717년에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무큐슈도오리 등과 엔킨즈키 격이 오구미로 충원되고 또한 상급가신의 분가창출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오구미 조 내의 고쿠다카의 변화가 있었다. 1622년에 2백석 이상은 52%이고 1백석 미만은 25%인데 비해, 1651년에는 2백석 이상 22명(26.5%, 160석 이상을 포함하면 33명으로 약

80) 上田純子(2007), 앞의 글. 182-183.

81) 小鯖村史. 124-127 참조.

82) 元和八年分限帳

83) 山内家文書(毛利氏年寄連署新與申渡奉書).

84) 享保二年分限帳

40%)이고 1백석 미만은 50.6%(42명)이다. 이는 오구미 중심이 1백석 이하로 옮겨 간 것이다. 이는 전시체제에서 벗어나 에도 경비를 원활히 대응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sup>85)</sup> 특히 80석 미만의 출신을 보면, 대계 무큐슈와 호로(母衣, 본진과 각 부대를 연락하는 직) 및 후다이 가문의 방계출신이다.<sup>86)</sup> 여기서 엔킨즈키격 출신에서 오구미격으로 승격한 요시다쇼인(吉田松陰) 조상의 예를 들어 우마마와리격의 가독상속과 다른 점을 살펴본다.

요시다 토모노조가 병사함에 따라, 상속을 청원한 결과 쌀 50섬과 그 밖에는 600몬메를 이상 없이 자식 주로자에몬에 상속하도록 분부하였다. 가업인 군법을 중단 없이 계속 이어가도록 하라고 분부하였다. 삼가 아뢰입니다.<sup>87)</sup>

부친의 봉록을 아들에게 상속하는 것을 허락하고, 상속자는 가업인 군법, 즉 무술사범의 가업을 중단 없이 계속 행하라는 내용이다. 원래 요시다 토모노조는 낭인이었다가 시게모토(重基)의 양자가 됐다. 그리고 그는 1700년에 엔킨즈키,<sup>88)</sup> 1716년에 오구미로 발탁되었다.<sup>89)</sup> 그의 봉록은 약 80석(기리마이 혹은 후치마이 및 은을 고쿠다카로 환산) 이하의 소신슈이다. 후술의 이바라씨와 달리, 여기에는 번주에게 청원 내지는 허락의 내용이 없고 가한야쿠가 심의한 결과를 화답이 아닌 도장을 찍어 조장에게 송부한 것이다. 그리고 우마마와리격에는 없는 ‘가업’이라는 내용이 있고 이를 계승하라고 했다.

이와 같이 무큐도오리 혹은 엔킨즈키 격 등이 오구미로의 편입으로 인해, 오구미조의 인원수는 계속 증가하게 됐다. 인원수가 증가하게 된 또 다른 원

85) 森下徹(2012), 앞의 책, 29.

86) 예를 들면, 60석의 장(張)씨는 호로출신이고, 이노우에씨와 와타나베씨 등은 방계출신이다. 山内家文書毛利氏年寄連署新與申渡奉書; 広島御時代分限帳 元和八年分限帳 참조.

87) 吉田友之允病死事に付き, 跡職の事相伺ひ候處, 米五拾俵 外に銀六百目相違なく, 悴十郎左衛門門へ相續仰付けらるべき旨に候條 家業の軍法斷絶なき様申し渡さるべく候 恭々謹言. 享保五 二月十二日 山(内)總殿(通判) 毛(利)疏後(廣政判), (外封)志道太郎右衛門殿 출처: 毛利家加判衆連署奉書, 山口県教育會編 53 참조.

88) 藩府申渡書<遠近付編入の件>.

89) 요시다 토모노조는 享保元年分限帳에 오구미조로 등재됐다.

인으로 분가창출을 들 수 있는데, 우선 오구미 무사의 고쿠다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규료초를 보면, 총 1082명 중에서 5백석 이상 35명(3.2%), 2백석 이상 210명(19.4%)이다. 이에 비해 2백석 이하는 953명으로 88%이고, 1백석 이하는 653명으로 60.3%를 차지하고 있다. 요리구미격 가문 출신의 오구미 무사(조장 제외)가 총 고쿠다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28%이다. 또한 모리씨의 방계가 약 4천석이 있다. 그리고 이노우에씨(총인원 41명, 이 중에서 2백석 이상 9명)와 같은 후다이 가문이 있다. 이들을 합하면 거의 몇몇 가문이 오구미를 장악하고 있다. 특히 요리구미격 가문의 분가 혹은 방계 출신의 오구미 무사는, 5백석 이상 19명(54.2%), 2백석 이상 69명(약 33%), 5백석을 포함한 2백석 이상은 약 36%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요리구미격과 후다이 가문 및 모리씨의 분가 혹은 방계 출신이 오구미를 장악하고 많은 고쿠다카를 차지했다. 그러나 여기서 동일한 가계이라도 출신에 따라 분가창출의 차이가 있다. 규료초를 기준으로 오구미 10명 이상을 배출한 요리구미격 가문은 이와야씨 37명, 고다마씨 27명, 나이토우씨 23명, 후쿠바라씨 16명, 와타나베씨 15명, 가츠라씨 14명, 아카가와씨 12명, 이이다씨 12명, 구니시씨 11명, 시지씨 10명, 다카스씨 10명이 있다. 이와 반대로 비후다이 출신, 설령 고쿠다카 2천석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도, 분가 창출이 적다. 즉, 사세씨 1명, 시미즈씨 1명, 나시와씨 3명, 야나기사와씨 1명, 에노모토우씨 3명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비후다이 출신은 후다이 혹은 친인척 출신보다 차별 대우를 받았다.

## 2) 가독상속의 비교

여기서 구체적으로 우마미와리격과 소신슈의 가독상속의 청원 절차와 특징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본다.

이바라 류에몽은 아들이 없어서, 노미 고자에몬의 삼남 효에를 데릴사위로 들이고 싶다는 청원에 대해, (번주에게)의향을 여쭙본 결과, 청원대로 하

라고 분부하셨다. 이를 전달해라. 삼가 아뢰입니다.<sup>90)</sup>

이바라 나리다카시(就尙)의 청원은 대조장을 통해 가한슈에 전달되고, 가한슈가 번주의 의향을 확인해 그 결과를 전달한 것이다. 내용은, 나리다카시는 가독 계승자인 아들이 없기 때문에 노미씨의 3남을 데릴사위로 하고 싶다는 청원에 대해, 번주는 청원대로 하라고 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첫째, 이 당시 조원의 가독 상속은 대조장을 통해 출원되고 또한 대조장을 통해 그 결과를 받았다. 둘째, 전술한 萬治制法 24조에 1백석 이상의 규정과 같이, 양자 및 혼인과 가독 상속은 번주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번주는 이를 통해 우마미와리와 직접 주종관계를 체결 혹은 확인했다. 이는 소신슈인 요시다씨의 예와 대비된다. 셋째, 데릴사위 상속도 고쿠다카의 삭감 없이 출원대로 승인한 것이다. 이와 같이 가독 상속에서 조상의 훈공 혹은 덕택이 중시됐다.

위와는 다른 예를 분석한다. 요시다 토모노조의 3대째 데릴사위를 들이려고 하는데 “가업의 혈통이 맞지 않기 때문에 기량이 없음(業筋不器用)”라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자, 그 데릴사위 아들에게 가독을 잇게 하려고 했으나 “유년(소)”라는 이유로 또한 인정되지 않았다. 약 10년간(1757년-1767)가독상속이 인정되지 않았다가, 1767년에 비로소 상속이 허락됐다.<sup>91)</sup> 이는 위의 이바라씨의 데릴사위 양자와 나리다카시의 유년(소) 상속과 대비된다. 단, 위와 같은 차이점은 있더라도 공통점도 존재한다. 여기서 요시다씨의 말기 양자의 예를 들어본다.

요시다 니쥬로가 병사하여, 상속에 대한 청원에, (그가 전에) 병중에 고

90) 井原十右衛門事男子無之付、乃美五左衛門三男瀨兵衛を婿養子ニ仕度之通、御理之趣相同候処、此段可被申渡候、恭々謹言。寛文十戌十一月廿日毛 宮内 繁 二郎兵衛 益 孫左衛門 益 月中 毛 隱岐 毛 外記 毛 内匠 益田隼人殿 출처: 四代目就尙 御奉書類 일자 다음 성명의 직책은 가한야쿠, 토우야쿠, 토우쇼쿠이고 각각의 화압을 생략했다.

91) 山口県教育会編 53-54 참조

노 쿠로자에몬의 차남 이치우를 가(假)양자로 할 것을 청원하고 (요시다 니쥬로는) 곧 사망하였다. 이에 근거한 상속법에 따라 봉록 80석에서 22석 4두를 감하여 나머지 56석 6두를 이치우(市佑)에게 상속시켜라. 가업을 중단 없이 행하라고 분부하였다. 삼가 아뢰입니다.<sup>92)</sup>

이 내용은 니쥬로가 병사했는데 그가 전에 병중에 가(假)양자를 제출했다.<sup>93)</sup> 이를 심의한 결과, 이치우(市佑)는 말기양자로 인정되어 봉록 80석에서 56석 6두(22석 4두 감소)를 상속한다. 이는 전술한 이바라씨 말기 양자의 가독 상속과 마찬가지로 萬治制法 25조 1항을 적용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우마마와리격과 소신슈 모두 말기 양자에 관한 법령을 동일하게 받은 것 같다. 그렇지만, 위의 동일 조항에 “(말기 양자라도)만약 양부가 특별한 충절이 있으면 (삭감되지 않고)전부 상속할 수 있다.”에서 볼 수 있듯이, 말기양자에 관한 법령 적용은 다양했다. 설령 우마마와리격과 소신슈가 말기 양자의 법령을 동일하게 적용 받았더라도, 이들 사이에는 격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했다. 이들 사이에는 전술한 가독 상속에서 번주와의 관계 및 여러 제도와 문서 내용 및 절차 등의 차이뿐만 아니고, 혼인과 양자 및 데릴사위(대상)의 격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면, 요시다 쇼인(40석)과 양부(켄료[賢良], 친 숙부)는 무큐도오리(26석) 출신이고, 양부의 처는 호농 모리타 요리히로시(森田頼寛)의 4녀인데 가격의 문제로 구보고로자에몬(久保五郎左衛門, 49석 5두)의 양녀가 되어 시집갔다.<sup>94)</sup> 여기서 주목할 것은, 소신슈는 오구미격 이하의 격, 심지어 무사신분이 아닌 자들과도 양자 및 혼인관계를 맺고, 또한 가격에 맞는

92) 吉田仁十郎病死に付き、跡職の事相伺ひ候處、病中河野九郎左衛門次男市佑假養子申し出で程なく果て候。之れに依り未跡職法を以て知行高八拾石の内、貳拾貳石四斗之れを減ぜられ、残つて高五拾七石六豆。市佑に立て遣はさるべき旨に候條、家業斷絶なき様申し渡さるべく候。恭々謹言。明和六十月五日 梨 頼母廣言(判) 熊谷圖書展。출처: 毛利家加伊衆連署奉書(吉田仁十郎跡職の事); 山口県教育会編 55-56 참조

93) 가양자는 상속인이 없는 상태에서 공무 중 급사 등을 대비하기 위해 양자를 임시로 정해 놓은 것이다.

94) 松風会: 松陰関係人物略伝(<http://shohukai.or.jp/syouinkankeijimbuturyakuden/syouinkankeijinbutumokuji.htm>.)

결혼을 하기 위해 형식적이고 일시적인 양녀를 맺었다.

### 3) 군역의 문제

우마마와리격과 소신수가 혼재한 오구미의 내부구조와 관계 및 군역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1662년 모리시타가 분석한 오구미격 하타노(波多野, 340석)씨의 가계 상황을 살펴본다. 하타노씨의 수입은 지교다카(이 당시 연공을 5할)와 우키마이 140석, 총 합계 161석 정도이다. 여기에서 가족이 소비하는 쌀과 무가 봉공인 7명의 후치마이와 기리마이, 합계 48.8석이다. 잔액 97석을 은으로 환산하고, 영지에서 나오는 잡세 수입을 합하면 은 3간 300몬메 정도이다. 그런데 하타노씨는 5간메(貫目)의 빚이 있어, 이 원금과 이자에 3간메(약 90석)를 지불했다. 여기에 조진이 있다. 최종적으로 46몬메 적자였다.<sup>95)</sup> 이는 17세기의 상황이고, 그 후로 연공율이 40%로 낮아지고 50%의 상납이 있고, 또한 봉공인 임금이 상승됐다. 번은 가신의 궁핍한 생활을 해결하기 위해 겐쇼고쿠와 자이고주타쿠 외에, 어부지방성(御扶持方成)을 실시했다. 이는 부채를 자력으로 갚을 수 없는 가신이 모든 영지를 번에 반환하는 대신, 부채가 해결될 때까지 반야쿠 등은 면제되고 생활비만을 받는 것이다. 어부지방성이 1704년 117명(약 13%), 1739년 299명, 1783년 215명이 있었다.<sup>96)</sup> 이외에도 1843년 오구미 무사(총 인원 1079명)에서 1/3(360명)이 자이고주타쿠를 했다. 많을 때는 반수 이상이 이 제도를 악용하여 반야쿠를 회피하려고 했다.<sup>97)</sup> 이렇게 됨으로써 하기에 거주하는 가신이 적어져 반야쿠를 수행할 수 없어, 하기에 남은 가신에게 담당하게 했다. 이런 문제점에 대응,

95) 森下徹(2012), 앞의 책. 64.

96) 田中誠二(2013), 앞의 책. 184.

97) 森下徹(2012), 앞의 책. 89-90. 원래 어부지방성은 1대에 1회까지 할 수 있지만, 후에는 이런 규정이 없을 정도로 빈번하게 신청했다. 田中誠二(2013), 앞의 책. 276. 이들은 부끄러움도 모르고 마치 장기 휴가를 얻은 것처럼 거리를 활보했다. 森下徹(2012), 앞의 책. 71. 자이고주타쿠는, 처음 신청 자격이 200석 이하, 기간은 3년 혹은 5년이었다. 그러나 후에 기간이 13년이 되고, 1803년에는 250석 이상도 허가됐다. 森下徹(2012), 위의 책. 89.

즉 인원수를 맞추기 위해 1백석 미만인 자들로 보충했다.<sup>98)</sup> 심지어 가신들은 위와 같은 제도를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편법 혹은 불법도 사용했다. 오카야마번 등에서는 하급무사에서 시작되어 상급무사로 까지 퍼진 (양가에 지참금을 갖고 오는)지참금 양자가 횡행했다.<sup>99)</sup> 하기번의 사료에서 볼 수 없지만, 萬治制法에서 지참금 양자 같은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는 조항이 있다. 25조 7항, “양자를 삼는데 갖가지 책략을 쓰고 당국(公儀)을 속이고 양자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는...양부(자), 또한 알선한 자 혹은 주선한 자도 엄벌에 처한다.” 또한 6항에, “금전을 탐하거나 권세에 아부하여 스키메(筋目, 혈통 혹은 내력)가 다른 양자 맺는 것을 금하고, 원래 선조의 훈공 때문에 영지를 급여했던 것인데, 여기에 욕심과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완전히 무사가 아니다(非士).” 여기서 지참금 양자와 같이 금전 혹은 승격을 위해 양자 맺기가 횡행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좀 더 萬治制法을 통해 조장과 조원의 관계를 분석한다. 마치 부자관계처럼 조장은 조원을 구미코(組子-이하 조원으로 표기)라고 불렀다. 조원은 조장에게 예의 바르며, 명령에 복종하며, 조장은 조원의 근무태만 등에 대해 공정하게 징벌하며...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萬治制法 25조 1항에, “말기양자는 원칙적으로 금하지만, 조장과 메츠키(目付, 감찰관)가 양자의 스키메를 확실하게 보증한다면, 평의(僉儀)하여 본래의 고쿠다카에서 2분의 1 혹은 3분의 1만을 인정하다.” 이와 같이 조장은 조원의 가독 상속과 양자관계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萬治制法 12조 8항에, “조원은 조장 반가 시라 쇼닌의 명령에 예의바르게 받들고...(조장 등은)...만약 이 명령에 위반하는 자가 있으면 속히 타이르고...타일러도 계속 무례를 범할 경우 재삼 타이르고, 그래도 안 되면 비밀리에 메츠키에 알려라. 메츠키는 사실 관계를 밝혀 법에 따라 엄히 처벌하라.” 그리고 “민사 소송의 법률적인 문제가 있으면 조

98) 田中誠二(2013), 앞의 책. 187; 森下徹(2012), 앞의 책. 75.

99) 大森映子(2003). 大名家における養子取組—岡山藩・田家資料の分析から—。湘南国際女子短期大学紀要, 10.

장과 반가시라가 알선 조정하며...만약 조원이 불복하면 봉행소에 넘기고, 만약 다른 조와 관련된 사항은 조장 간에 상의 조정하며, 만약 해결되지 않으면 봉행소에 넘겨라.”<sup>100)</sup> 위의 조항을 볼 때, 비록 조장과 조원 간에 (유사) 부자 관계가 형성되고 조장은 부친과 같은 권력을 지녔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조장에 있지 않고 가한슈(봉행소)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원래 오구미는 전시체제를 상정하여 만든 조로 조장은 조원에 절대적 권력을 갖았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군대를 출병시킨 것이 1650년으로, 그 후 평화가 지속됐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오구미는 전시대비보다는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 상태가 되고, 가한슈가 오구미에 대해 실질적 통제를 하고, 오구미에 소신슈와 같은 이질적인 존재가 있는 상태에서 조장과 조원의 절대복종과 강한 응집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것은 萬治制法 12조 9항에, “소년은 조장의 나태함을 간하고...”, 12조 11항에, “소년은 조장의 환심을 사고 아부하여...조닌(町人)으로부터 뇌물을 받는 것을 금지...” 등의 내용에서도 볼 수 있다.

#### IV. 결론

기존 가신단 구조의 연구에서에서 주로 가신의 종속성과 자율성, 특성의 격제와 역직 분석에 치중했던 것과는 달리, 본고는 제도와 관행, 특히 가독 상속과 문화를 통해 가신단 구조를 분석했다. 원래 우마마와리격 이상 가신의 가독상속과 혼인 및 양자관계는 번주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번주는 이를 통해 이들과 어은과 봉공이라는 직접적 주종관계를 체결했다. 그렇지만 번(주)은 상급 가신 내부에 격제를 두고 가독 상속에서 차별을 행했다. 이치몬하케는 다른 격 보다 번(주)에 대해 지분 혹은 상대적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 가독 상속에서도 번주는 그들의 청원을 대부분 인정해주고, 또한 이들 가문에게는

100) 防長回天史 第1篇 194.

분가 창출 혹은 다른 가문의 양자 혹은 가명 상속을 하게 해주었다. 이와 같은 번주의 배려(혹은 안배)외에도 고모 혹은 숙모와 누이 등이 가독 상속과 (데릴 사위를 포함한)양자 관계를 맺는데 큰 역할을 행했다. 이치몬한테 내부를 보면, 모리씨 가정과 관련된 사항과 격식에서 이치몬과 영대가로의 차별, 심지어 이치몬 내부에도 서열과 차별이 존재했다. 요리구미격에서 크게는 1천석 기준으로 가독 상속과 역직 취임의 차이를 두고, 또한 모리씨의 친인척 및 후다이와 기타 출신 간의 차별도 존재한다. 그 예로 요리구미격 중에서도 후다이와 친인척이 분가 요리구미를 창출하고, 오구미 무사도 이들 일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리고 이바라씨의 예와 같이, 조상의 훈공도 중요하지만 번주와의 개인적 관계(측근)가 가독 상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번(주)는 가독 상속에 있어서 우마마와리격(특히 후다이)에게 많은 혜택을 준 반면에, 소신슈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했다. 그리고 양자와 혼인관계에서 차이가 있었다. 우마마와리격 이상 사이에서는 비교적 대등하게 양자와 혼인관계를 맺었던 것에 비해, 소신슈는 주로 동격 혹은 오구미격보다 낮은 격, 심지어 무사신분이 아닌 자들과도 양자 및 혼인관계를 맺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비록 격제의 차이가 있지만 우마마와리격 이상은 무사(격) 대등이 원칙이 있고, 가독 상속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번주와 직접 주종관계를 체결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가독상속은 번주와 가신의 주종관계를 형성하는 기제이고, 가독상속(자)은 봉공, 특히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군역과 가추역 등을 행하게 할 전제이자 의무이다. 설령 상급가신들이 가독 상속에서 특별대우를 받아 정치경제 권력을 독점했다더라도, 많은 배신 및 봉공인과 막대한 부채와 낮은 연공을 및 상납 등으로 인하여 가계가 무척 어려웠다. 번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실시했고, 가신들도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가신들은 군역을 회피하고자 편법을 사용했고, 가추역 특히 역직도 맡으려고 하지 않았다. 심지어 가신들은 편법 혹은 불법으로 양자관계를 맺기도 했다. 위와 같은 편법과 불법이 횡행 했다는 것은 주종관계의 이완 혹

은 갈등 내지는 상극을 말해주는 것이다. 가신들이 군역과 가추역을 회피하고자 편법을 사용했던 결과, 오구미의 인원수가 부족하자 무큐도오리 등의 출신들로 보충했다. 이런 상태에서 원래 전시를 전제로 한 조장과 조원 사이의 절대복종과 강한 응집력은 약화됐다. 근세 중후기에 평화가 지속됨에 따라 군역 동원도 없었고 전시대비보다는 주로 조직의 일상적 업무를 수행했다. 여기서 부패가 횡행했다. 이러한 경향은 영주와 배신의 관계에서도 나타났다. 영주들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쌀 혹은 은 헌납을 통해 배신들을 발탁하고 승진을 시키고, 또한 배신 지위의 매매도 허락했다. 그리고 영주들은 군역보다는 가정 내지는 영지 관리에 초점을 두었다.

본고는 말기양자에 관한 정책의 변화와 그 적용에 대해 명확하게 분석하지 못했고, 또한 이바라씨와 요시다씨에 관한 사료에서 시기 차이가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금후 오구미격, 특히 근세 중후기 이바라 나리다카시 계통(가문)과 후다이 가문 및 막말 메이지 유신 시기에 활약한 인물의 조상 혹은 가문에 관한 사료 수집과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금후 아마구치 지역문화(사)의 분석을 통해, 막말 메이지 유신 시기의 가신단의 재편성 과정과 관계를 분석하려고 한다.

**【주제어】** 우마마와리격, 가격(家格), 군역, 주종관계, 가독상속

## [참고문헌]

- 高野言台(2014). 近世の武士と知行. 九州文化史研究所紀要, 57, 1-25.
- 磯田道史(2003). 近世大名家臣団の社會構造.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 磯田道史(2010). 幕末維新期の家老合意と御前會議. 岡山藩研究會編 藩世界と近世社會. 東京: 岩田書院.
- 根本みなみ(2018). 近世大名家における「家」と「御家」-萩毛利家と一門家臣-. 東京: 清文堂.
- 根岸茂夫(2000). 近世武家社會の形成と構造. 東京: 吉川弘文館.
- 大森映子(2003). 大名家における養子取組—岡山藩也田家資料の分析から—. 湘南国際女子短期大学紀要, 10, 148-166.
- 藤井讓台(1999). 江戸時代の官僚制. 東京: 青木書店.
- 笠谷和比古(2006). 主君「押込」の構造—近世大名と家臣団. 東京: 講談社學術文庫.
- 森下徹(2004). 近世瀬戸内海地域の労働社会. 東京: 溪水社.
- 森下徹(2012). 武士という身分-城下町萩の大名家臣団. 東京: 吉川弘文館.
- 上田純子(2007). 幕末の軍団. 森下徹編 武士の周縁に生きる. 東京: 吉川弘文館.
- 田中誠二(1989). 萩藩の本・支藩関係をめぐって. 山口県地方史研究, 61, 14-28.
- 田中誠二(2005). 萩藩の家臣団編成と加判役の成立藩制機構と家臣団. 山口大学文学会志, 55, 41-61.
- 田中誠二(2013). 萩藩行政史の研究. 東京: 塙書房.
- 重田麻紀(2016). 永代家老益田家の四組について. 山口県地方史研究, 116, 40-46.
- 坪内玲子(2000). 萩藩藩士における家系の継承と人口学的要因. 日本研究, 22, 111-129.
- 河本福美(2021). 萩藩の分限帳・無給帳と遠近方. 山口県文書館研究紀要, 48, 21-40.
- 河本福美(2003). 萩藩の地方知行制について—大組・羽仁氏を事例として—. 山口県史研究, 11, 1-22.
- 泉史編さん室(2012). 「土雇」として仕えた人々. 山口県史だより, 29, 2-3.
- 広島御時代分限帳(52給録13).
- 毛利氏加判衆連署奉書(井原家97<8の3>).
- 毛利氏加判衆連署奉書(井原家99<15の1>).
- 毛利氏加判衆連署奉書(井原家99<15の2>).
- 毛利家加判衆連署奉書(吉田友之允跡職の事)(吉田林邸関係資料360-1).
- 毛利家加判衆連署奉書(吉田仁二郎跡職の事)(吉田松邸関係資料360-3).
- 毛利秀就加冠状(井原家1).
- 毛利秀就女堵状(井原家12).
- 毛利輝元 毛利秀就連署女堵状(井原家4).

- 瀨府申渡書(遠近付編入の件)(吉田松陰関係資料359)  
四代目就尚御奉書類(井原家96<4の1>).  
四組人高其外賞書.  
山内家文書.  
阿川毛利宮彦家来給祿配当付其外(22諸臣184, 1870年).  
阿川毛利譜録(21巨室30).  
阿川毛利家沙汰書(阿武家(美祿市2)7).  
御家来御人数石高之.  
御家来中家筋(阿川毛利家中)(山県家9).  
牛庵様御時代賞書.  
元和八年分限帳(52給祿14).  
享保元年分限帳(52給祿45).  
享保二年分限帳(52給祿45).  
享保七年分限帳(52給祿45).  
享保十年分限帳(52給祿45).  
岡部忠夫編(1983). 萩藩家系譜. 琵琶書房.  
大和町史編纂委員会編(1983). 大和町史.  
末松謙登(1921). 防長回天史. 第1篇. 末松春彦.  
毛利綱広(1891). 萬治佛法.  
防長新聞社山口支社編(1966). 近世防長諸家系図綜覧. 防長新聞社.  
山口県教育会編(1936). 吉田松陰全集 第1巻. 岩波書店.  
山口県文書館編(1986). 萩藩閥閥録. 山口県文書館.  
山口県 編集(2022). 山口県史 近世(通史編).  
樹下明紀・田村哲夫(1984). 萩藩給祿帳. マツノ書店.  
時山弥八編(1913). 稿本もりのしげり. 時山弥八.  
阿部次男編(1989). 萩城下町絵図に見る分限帳. 文化・文政年間.  
阿部次男編(1991). 萩藩城下町の絵図に見る人名簿及び住所録. 享保14年(1729)~元文元年(1736).  
秋穂町史編集委員会編(1982). 秋穂町史.  
坂倉道義(1967). 小鯖村史.  
豊北町史編纂委員会編(1972). 豊北町史.  
河村一郎(2013). 萩藩主要役職者年表. 萩市立萩図書館.  
東京大学古文書フルテキストデータベース(<https://www.wap.hi.u-tokyo.ac.jp/ships/>).

須佐郷土史研究会(<http://susakyodoshi.sakura.ne.jp/>).

松風会 松繪関係人物略伝(<http://shohukai.or.jp/syouinkankeijinnbuturyakuden/syouinkankeijinbutumokuji.htm>).

## [국문초록]

본고는 가독(家督)상속의 제도와 관행을 통해 우마마와리격(馬廻格) 이상 상급가신단의 구조의 실상과 관계를 분석했다. 번(주)는 가신들의 군역 등의 봉공을 기대하여, 가독 상속을 통해 상급가신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다. 이리함에도 불구하고 상급가신들은 낮은 연공율과 상납, 막대한 부채, 많은 배신(陪臣)의 인건비 등으로 인하여 가계가 무척 어려웠다. 번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실시했지만,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가신들은 군역 등을 회피하고자 편법을 사용했다. 이는 번주와의 주종관계의 이완 혹은 갈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번(주)는 상급가신에게 동일한 대우를 해 준 것이 아니고, 실령 동일한 가격(家格)이더라도 출신 및 조상의 훈공에 근거하여 서열을 두고 가독 상속 등에서 차별적 운영을 행했다. 이로 인해 구성원끼리 차별과 배제가 이루어졌고, 또한 이 결과 결속력도 약화됐다.

[Abstract]

## The Structure of the Hagi Clan's Regiment of the Upper Class Retainers

- Focusing on Katoku Successions Systems and Military Service

Choung, Hayoung (Nanfang College Guangzhou)

Through the convention and institution of Katoku successions systems, this article analyses relationship and structure of the superior class retainer group and the Umamawari Kyaku. The feudal lord expected military service from his retainers through the succession of Katoku succession system which brought many benefits to the higher retainers. However, the family situation of the higher retainers was in poverty due to low annual income, high reparations, huge debts, and the high labour costs of many retainer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various systems were implemented by the Domain (Lord of Domain), but unlike the purpose of the system, retainers used disguised methods to avoid military service and other duties. This indicated the relaxed or contradictory relationship between the master and the subordinates of the feudal lord. Actually, the feudal lord (lord) did not give the same treatment to the superior retainers. Even if they were of the same family status, they would be ranked according to their origins and the contributions of their ancestors, and differentiated operations would be implemented in terms of succession of retainers. Therefore, within the same family structure, there are also differences and exclusions between members, and cohesion is also weakened.

논문투고일: 2024년 06월 30일 / 논문심사일: 2024년 08월 10일 / 게재확정일: 2024년 08월 27일

【저자연락처】 2021hyc@naver.com